



THE TASTE OF KOREA  
H A N S I K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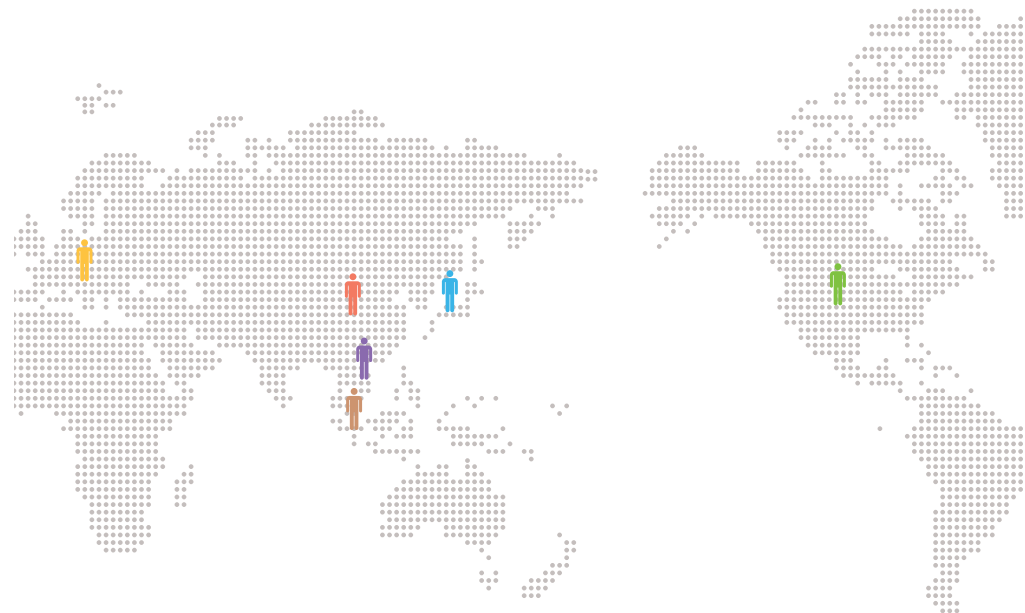
11-1541000-001286-14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외식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

THE TASTE OF KOREA  
H A N S I K



# 외식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베트남  
싱가포르

외식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베트남  
싱가포르

# CONTENTS

## PART 1.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 제1장. 지식재산권이란?

1. 지식재산권의 의미 08
2. 지식재산권의 특성 09
3.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비교 10

### 제2장. 외식산업의 지식재산경영

1. 외식산업 지식재산경영의 의미 12
2. 외식산업 지식재산경영의 필요성 13
3. 지식재산경영 성공사례 14
4. 지식재산경영 실패사례 15

### 제3장.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제도

1. 외식산업과 특허제도 16
2. 외식산업과 상표제도 18
3. 외식산업과 디자인제도 23
4.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구체적 사례 25
5.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26
6. 외식산업 관련 해외권리 취득절차 34

### 제4장.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1. 지식재산권의 분쟁 36
2. 특허 관련 분쟁사례 37
3. 상표 관련 분쟁사례 38
4. 디자인 관련 분쟁사례 39
5. 구제방안 40
6. 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지원사업 41

## PART 2. 세계 속의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 제1장.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 미국 지식재산권의 체계 44
2.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46
3.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49
4. 미국 진출 시 유의사항 50

### 제2장.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 일본 지식재산권의 체계 51
2.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54
3.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60
4. 일본 진출 시 유의사항 61

### 제3장.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 중국 지식재산권의 체계 62
2.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64
3.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68
4. 중국 진출 시 유의사항 69

### 제4장. 유럽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 유럽 지식재산권의 체계 70
2. 유럽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72
3. 유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76
4. 유럽 진출 시 유의사항 78

### 제5장.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 베트남 지식재산권의 체계 80
2.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82
3.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88
4. 베트남 진출 시 유의사항 89

### 제6장. 싱가포르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1. 싱가포르 지식재산권의 체계 90
2. 싱가포르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92
3. 싱가포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97
4. 싱가포르 진출 시 유의사항 99

### 부록

- 해외 지식재산권 센터(IP-DESK) 100
- 외식산업 등 중소기업 해외투자 지원제도 102
- 각 국가별 지식재산권의 법령 및 집행관청 104
- 해외 지식재산권의 취득 비용 105
-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시 기타 유의사항 106

# PREFACE

## 「외식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 발간에 즈음하여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는 「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식 이야기를 좋아할까?」라는 책의 서문에서 ‘음식을 만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언어뿐만 아니라 맛, 정신, 영감,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그 지역만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풍경과 언어, 민족 집단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음식에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도 제각기 다른 빛깔을 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은 그들 고유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21세기에는 그 문화를 널리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식문화 세계화 사업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식문화 강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해외 외식업체들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자국의 음식문화를 보호하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여 국제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외식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한식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면모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식재산권이 음식문화 세계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기반의 해외 진출 전략은 한국인의 흥과 멋이 담긴 한식을 기반으로 한 우리 외식업체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통한 한식 세계화의 저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외식산업 종사자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의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한식재단에서는 「외식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외식업체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발굴, 활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췌록 본 책자가 외식산업의 일선에서 한식 세계화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손쉽게 활용되고 이를 통해 우리 한식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에 미약하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발간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한식재단 이사장 **양 일 선**

# 01

##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

### 제1장. 지식재산권이란?

1. 지식재산권의 의미
2. 지식재산권의 특성
3.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비교

### 제2장. 외식산업의 지식재산경영

1. 외식산업 지식재산경영의 의미
2. 외식산업 지식재산경영의 필요성
3. 지식재산경영 성공사례
4. 지식재산경영 실패사례

### 제3장.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제도

1. 외식산업과 특허제도
2. 외식산업과 상표제도
3. 외식산업과 디자인제도
4.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구체적 사례
5.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취득절차
6. 외식산업 관련 해외권리 취득절차

### 제4장.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1. 지식재산권의 분쟁
  2. 특허 관련 분쟁사례
  3. 상표 관련 분쟁사례
  4. 디자인 관련 분쟁사례
  5. 구제방안
  6. 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지원사업
-

# 01

## 지식재산권이란?

### 01. 지식재산권의 의미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에 의하여 창작된 무형의 가치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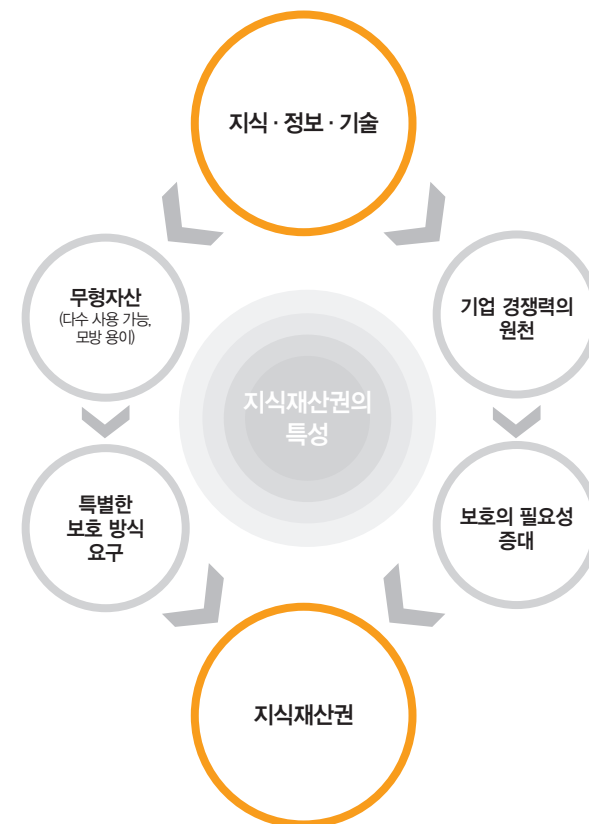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 기술, 브랜드 가치, 경영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정의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02. 지식재산권의 특성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입니다. 이는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됩니다. 유형적 권리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방이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보호와는 다른 방식의 보호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사람, 물건, 돈 등의 유형자산에서 지식, 정보 등의 무형자산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03.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비교

####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적창조물에 의한 권리'란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물(발명, 책)에 대한 보호를 말하며 '영업표시에 관한 권리'란 영업상의 표지로서 가능한 것(상표, 상호)에 대한 보호를 말합니다.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며 외식산업과 관련이 깊은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은 그 보호하는 대상이 각기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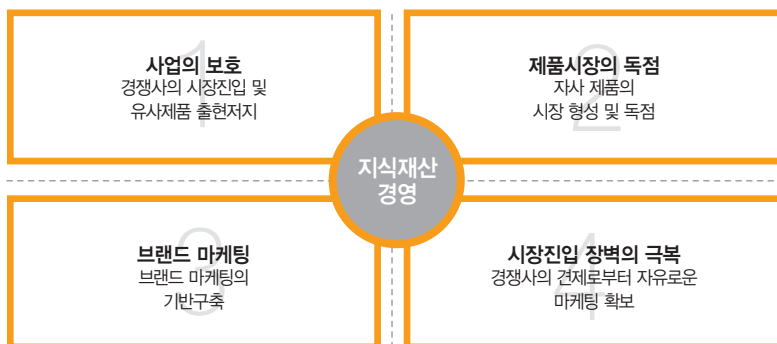
- 특허권은 높은 수준의 발명의 사상을 보호합니다.
- 실용신안권은 간단한 물품의 구조를 보호합니다.
- 상표권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보호합니다.
-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 02

## 외식산업의 지식재산경영

### 01. 외식산업 지식재산경영의 의미

외식산업의 지식재산경영이란 외식업과 관련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방법입니다. 지식재산경영으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시장참여를 억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외식산업 지식재산경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

### 02. 외식산업 지식재산경영의 필요성

최근 외식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획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식업과 관련된 무형 지식의 권리화로 **경쟁업체 제품과 차별화**함으로써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무한 경쟁의 시장에서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을 방어하는 방패인 동시에 경쟁업체를 공격하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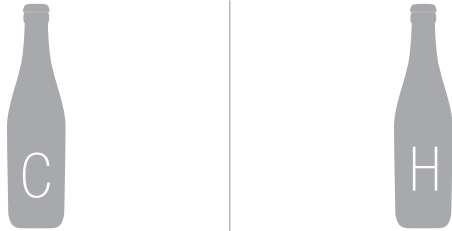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좋은 상품을 결정하는데 '기술', '외관', '브랜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는 권리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 03. 지식재산경영 성공사례

#### 하이트맥주의 브랜드 경영



#### 사건의 개요

1993년 설립된 J맥주사의 'C맥주'는 소비자들에게 '맥주의 맛이 쓰고 거칠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잠재하고 있어 맥주시장에서 항상 2인자였습니다. 1993년 경, J맥주사는 신제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역시 쓰다"고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제품인 "H맥주"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C"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 "지하 150미터의 천연 암반수로 만들었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C"에 대한 뿌리박힌 소비자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맥주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1998년에는 회사상호를 (주)맥주에서 (주)H맥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사점

#### 1. 기본 브랜드의 고정관념 극복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 브랜드를 지키면서 상품의 상표만 변경하기도 하지만 H맥주사는 기본 브랜드였던 'C'를 포기하고, 뉴 브랜드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변신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H맥주사는 새로운 제품의 출시와 함께 뉴 브랜드로 바꾸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2. 상표의 상호화

H맥주사는 성공한 브랜드를 상호로 변경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브랜드의 관념을 사라지게 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04. 지식재산경영 실패사례

#### L제과 '빈츠' 선등록상표와 유사로 상표권 확보 실패



#### 사건의 개요

L제과는 비스킷 과자류 상품에 대해 '빈츠'라는 상표를 2000.07.25.에 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L제과는 특허청으로부터 선등록상표인 '비츠'로 인해 상표등록이 불가함을 통보받게 되었는데 L제과가 '빈츠'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비츠'라는 상표가 등록되었으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L제과는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거절결정불복항고심판을 청구(2001.09.19.)하였습니다. L제과는 선등록상표인 '비츠'는 과자류 상품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어단어 'bit's'의 한글음역으로서, '작은 조각, 소량' 등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어 식별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L제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L제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L제과는 '빈츠'를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 시사점

위 사례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을 받지 못 하게 되어, 결국 상표 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신제품의 컨셉확정과 브랜드선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의 후보 안이 몇 개로 압축되면, 이러한 상표를 모두 출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L제과는 신제품 개발에 있어 선등록상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에 실패한 것입니다. 상품의 출시직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품출시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행조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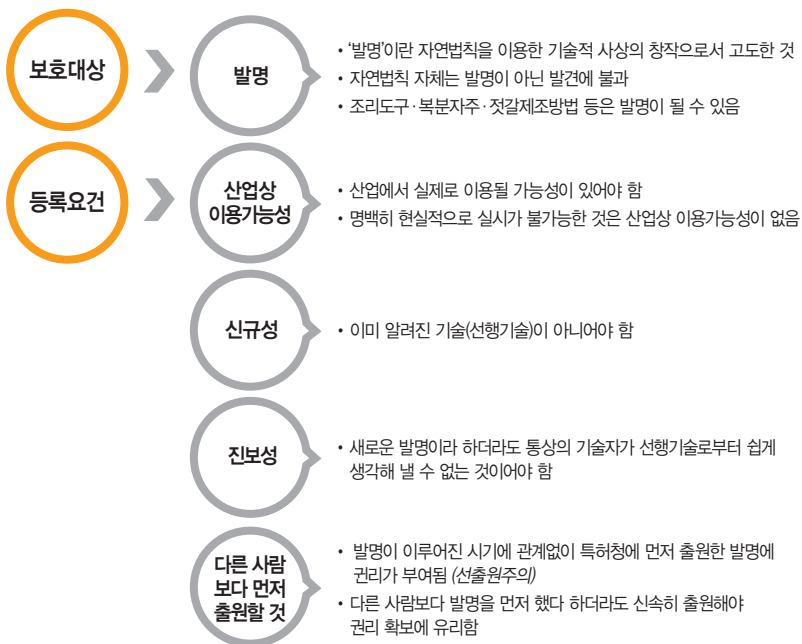
(다만 L제과의 경우 영문상표 'BINCH'로 등록받아 제품 출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03

## 외식산업과 지식재산권 제도

### 01. 외식산업과 특허제도

####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 외식산업에서의 특허



#### 실제 등록된 특허의 예



## 02. 외식산업과 상표제도

###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보호대상

상표

-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수단으로써 기호·문자·도형·입체적형상·홀로그램 등이 있음
- 상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를 식별하는 표장도 있음(서비스표)
- 자신의 비영리 업무(대한적십자, 한국소비자보호원)를 식별하기 위한 표장도 있음(업무표장)
-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도 있음(단체표장)

등록요건

자격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에 따라 그 자격이 결정됨

식별력 있을 것

- 식별력이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함
- '새우깡'은 새우가 함유 된 과자에 대해 식별력이 없어 등록 불가능함
- '신짱'은 과자에 대해 식별력이 있으므로 등록 가능함

부등록사유 없을 것

- 국가·단체·종교와 관련되는 것, 출원 전에 이미 유사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 된 것,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등 권리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 불가능함

#### 소리상표와 냄새상표

한미 FTA 협정(2012.3.15. 발효)에 의하여 소리상표, 냄새상표도 보호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리상표란 청각 기관에 의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표장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작음', 펄시콜라사의 '병 따는 소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냄새상표란 후각 기관에 의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표장으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 향', 차량용 윤활유의 '아몬드 향' 등이 있습니다.

상표	지정상품	내용
Car	자동차	상표가 그 상품의 명칭을 지칭하므로 식별력 없음
깡	과자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그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므로 식별력 없음
대구	사과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므로 식별력 없음
Super, Best	상품에 무관	상품의 품질의 상태·우수성 등을 표시하므로 식별력 없음
Silk	넥타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므로 식별력 없음
Quick Copy	복사기	그 상품의 효과나 성능을 표시하므로 식별력 없음
Lady	여성의류	그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므로 식별력 없음
2컬레	상품에 무관	수량을 그대로 표시하므로 식별력 없음
소형, 대형	상품에 무관	상품의 크기 등을 표시하므로 식별력 없음
수제	구두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므로 식별력 없음
봄	의류	사용시기를 표시하므로 식별력 없음
뉴욕	상품에 무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으로 식별력 없음
김씨	상품에 무관	흔한 성 또는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식별력 없음
123	상품에 무관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여 식별력 없음
www	상품에 무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인사말 등은 식별력 없음

[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식별력이 없는 상표) ]

#### 상표의 유사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가 유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표의 속성인 외관형상이 유사하거나(예 : HOP와 HCP), 호칭이 유사하거나(예 : NHK와 MHK) 또는 의미가 유사(예 : 왕과 KING)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상품도 유사해야 하는데 지정상품의 유사는 대비되는 두 상품의 객관적인 속성, 즉 상품의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방법의 공통성 제조장소나 판매점 등이 현실로 공통되는가에 따라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두 상품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지로 판단합니다.

## 상표의 유형

 <p>문자상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4-2008-12</li> <li>등록번호   40-000053-0000</li> <li>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30류 : 비빔밥</li> <li>출원인   전주비빔밥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li> </ul>
 <p>도형상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0-2004-0026843</li> <li>등록번호   40-0618101-0000</li> <li>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33류 : 쌀막걸리</li> <li>출원인   (주)국순당</li> </ul>
 <p>입체형상 상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0-2001-0039144</li> <li>등록번호   40-0539281-0000</li> <li>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29류 : 바나나 성분이 함유된 우유</li> <li>출원인   (주)빙그레</li> </ul>
 <p>서비스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1-2008-0017515</li> <li>등록번호   41-0184592-0000</li> <li>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43류 : 간이식당업</li> <li>출원인   (주)김가네</li> </ul>
 <p>업무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2-2002-0000255</li> <li>등록번호   42-000142-20000</li> <li>출원인   재단법인 아름다운 재단</li> </ul>
 <p>단체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4-2007-0000026</li> <li>등록번호   44-0000033-0000</li> <li>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29류 : 멸치(살아있지않은것)</li> <li>출원인   남해죽방멸치영어조합법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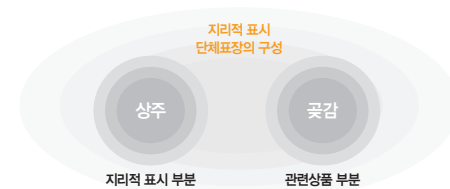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개정상표법을 통해 2005년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는 꽃감에 대한 지리적 표시  한산은 모시에 대한 지리적 표시  이천은 쌀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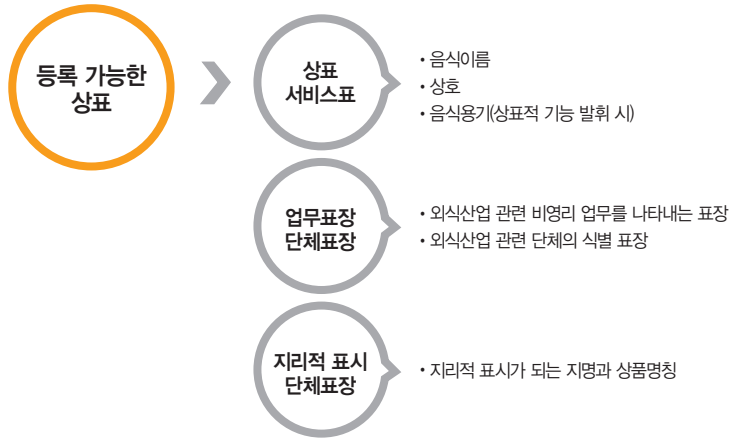


따라서 “**상주꽃감**”, “**한산모시**”, “**이천쌀**” 모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실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예

 <p>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4-2010-20</li> <li>등록번호   제113호</li> <li>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31류 : 사과(신선한것)</li> <li>출원인   대구사과 영농조합법인</li> </ul>
 <p>꽃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4-2010-28</li> <li>등록번호   제119호</li> <li>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29류 : 건사(꽃감)</li> <li>출원인   영농조합법인 장성꽃감</li> </ul>
 <p>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번호   44-2010-22</li> <li>등록번호   제121호</li> <li>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29류 : 보존처리된 생선</li> <li>출원인   사단법인 추지도참굴비유통가공협의회</li> </ul>

### 외식산업에서의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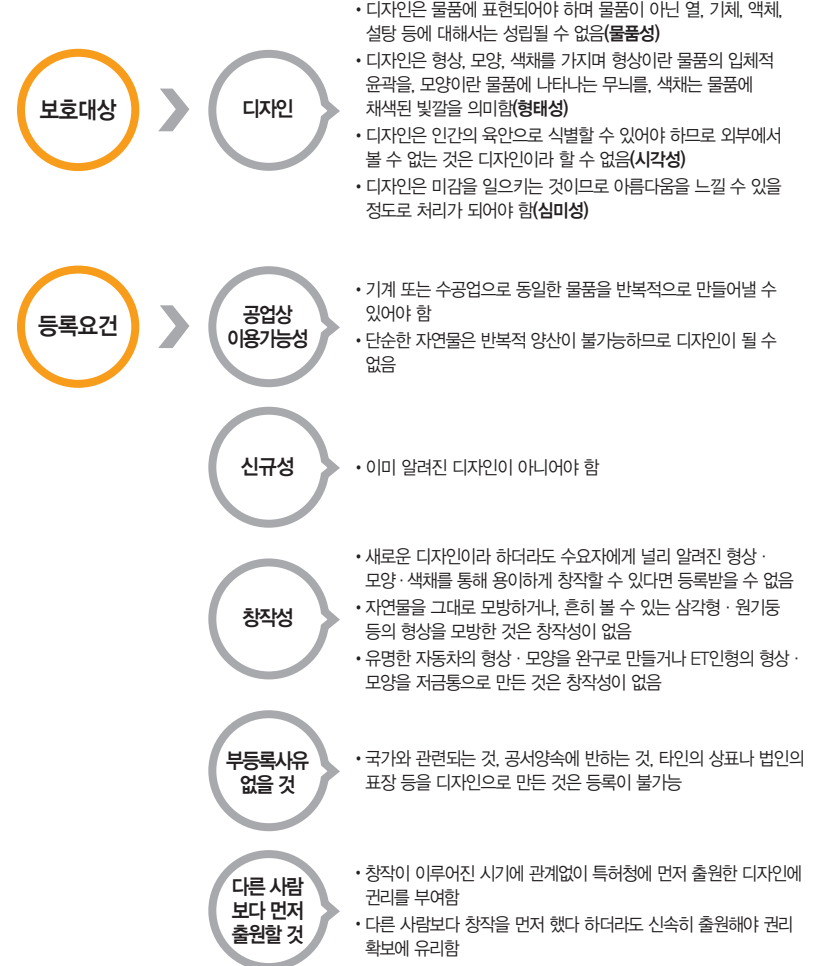


### 실제 등록된 상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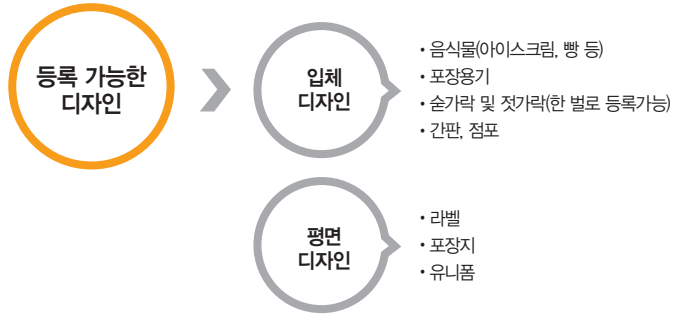


### 03. 외식산업과 디자인제도

####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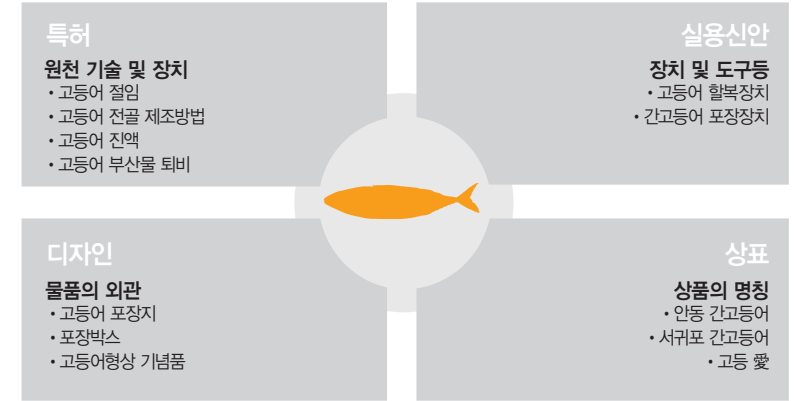
외식산업에서의 디자인



실제 등록된 디자인의 예



04.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구체적 사례



[ 구체적 사례 1 : 고등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



[ 구체적 사례 2 : 막걸리에 관한 지식재산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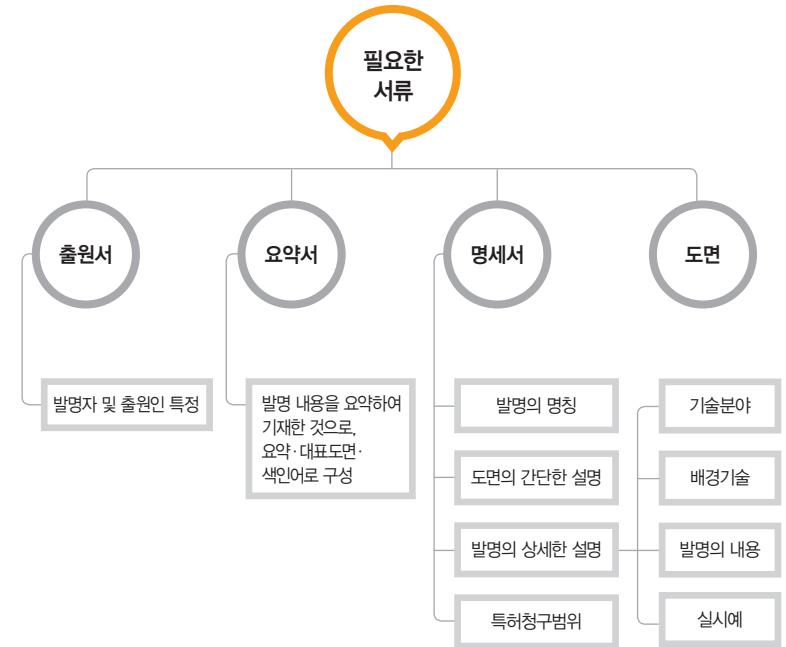
## 05. 외식산업 관련 권리 취득절차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과정



### 출원에 필요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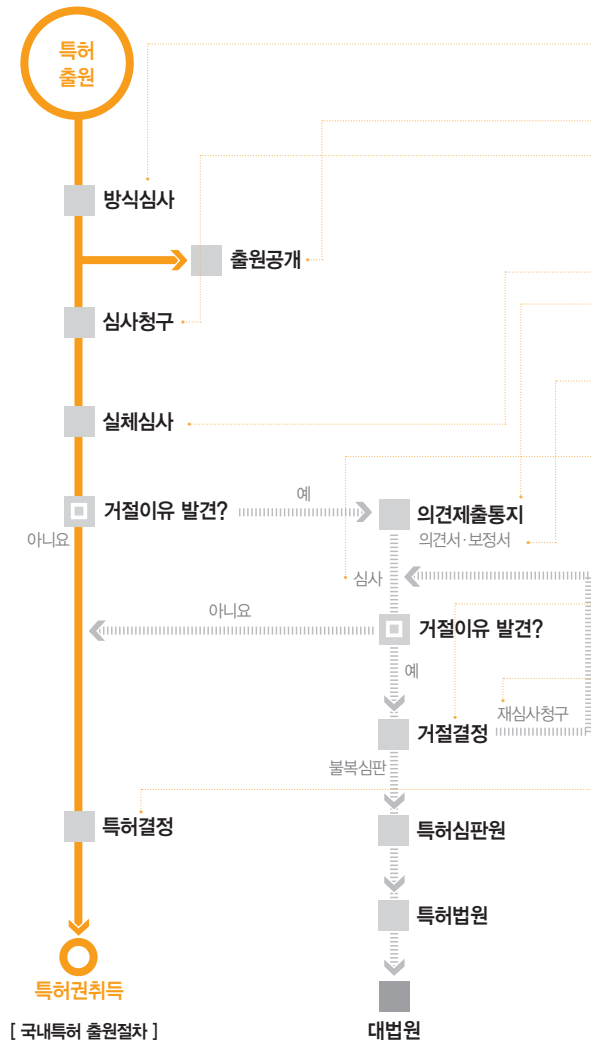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제출하며 기재 정도가 미비하면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 서식안내

출원서, 요약서 및 명세서의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 접속하여 HOT LINK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취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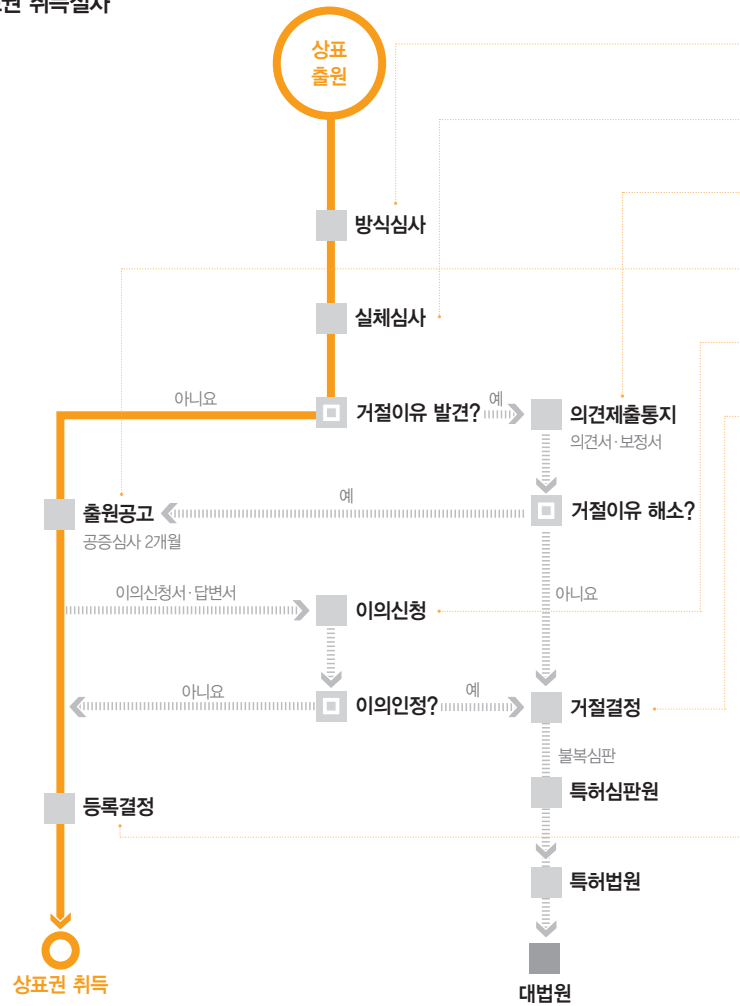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적격, 필수사항의 기재, 수수료의 납부, 대리권의 흠결, 행위능력의 흠결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출원내용을 공지합니다.
- 심사청구** 심사청구된 것에 한하여 심사를 합니다.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실체심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절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통지**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에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보정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며 보정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거나 출원서류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심사** 보정이 있는 이후에는 보정된 내용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특허결정**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거절이유가 있었으나 보정을 통해 이를 극복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허결정 이후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며,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
- 거절결정**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고, 보정 등을 통해서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불복하기 위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보정을 하면서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사의 청구라 합니다. 재심사의 청구는 1회만 가능하며 같은 거절이유에 대해서 2번 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취득절차



[ 국내상표 출원절차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특허·실용신안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인자격, 수수료 납부 여부 등 법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실체심사** 상표출원의 심사는 특허·실용신안과는 달리 별도의 심사청구를 요하지 않고, 출원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출원공고** 실체심사 결과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 보정 등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출원된 내용을 공고합니다.
-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고, 보정 등을 통해서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거절이유가 있었으나 보정을 통해 이를 극복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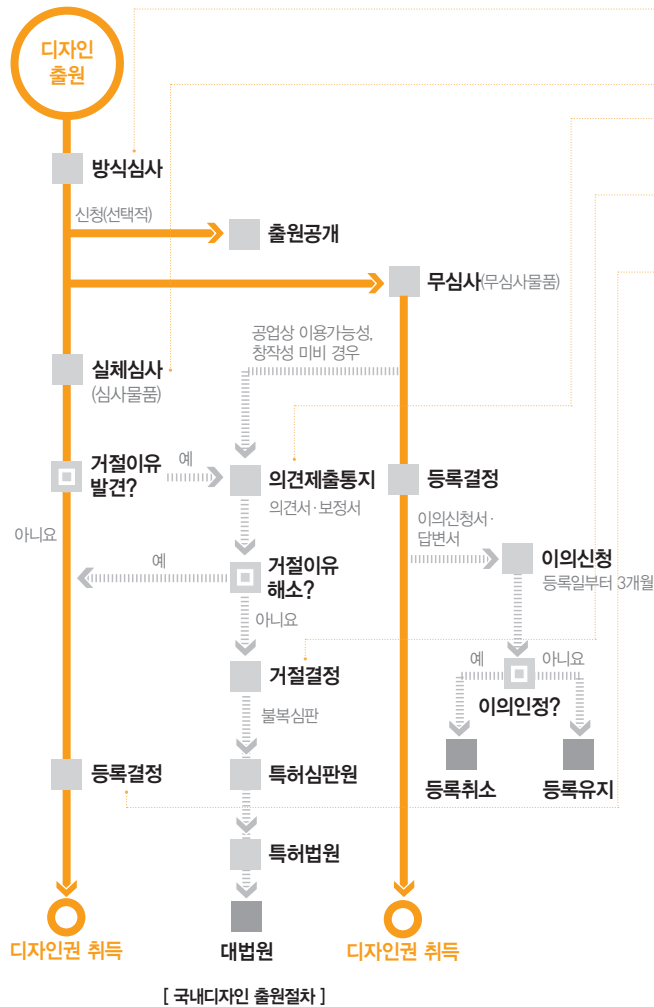
한 개의 상표를 출원해야 하므로 한번에 두 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할 수 없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SAMSUNG' 라는 1개 상표를 '정보통신업', '개인휴대통신업', '자동차금융업', '화장품도매업', '간식식당업' 등 4248개의 서비스업에 대해 등록받았습니다.

### 디자인권 취득절차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특허·실용신안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인 적격, 수수료 납부 여부, 법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실체심사** 상표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행합니다.
-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 거절결정**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고, 보정 등을 통해서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거절이유가 있었으나 보정을 통해 이를 극복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제도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조속한 등록을 위해 실체심사 일부를 하지 않는 제도를 병행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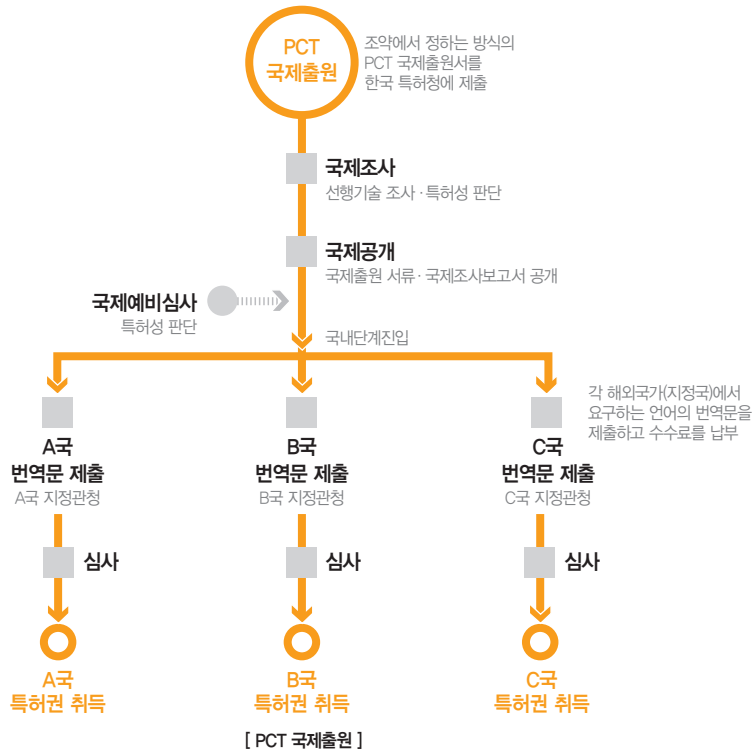
####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않아 비밀상태로 유지됩니다. 출원 시 또는 설정등록 전까지 비밀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06. 외식산업 관련 해외권리 취득절차

### 특허의 국제출원(PCT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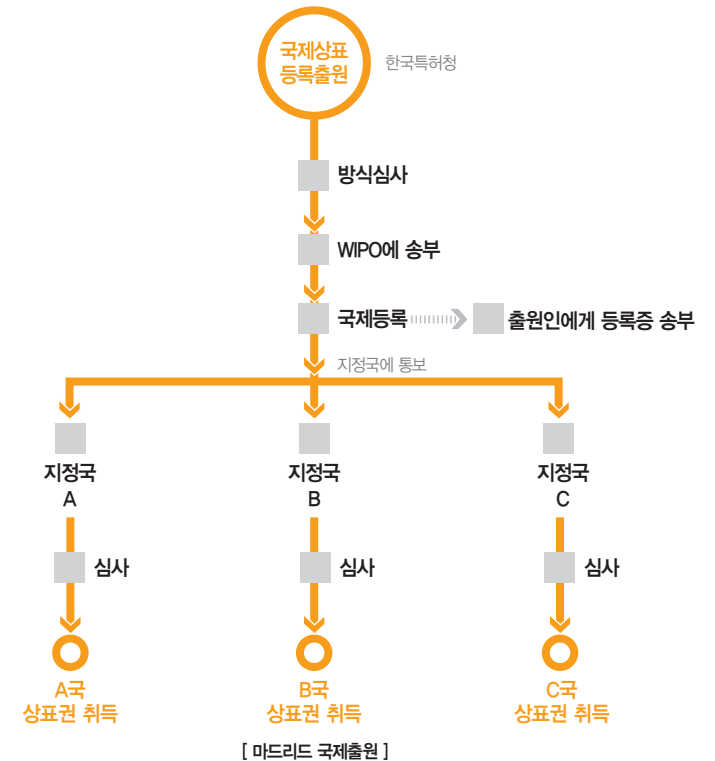
PCT 출원이란 국제국(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해외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각 지정국의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해외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각 국가별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PCT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PCT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상표의 국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상표의 해외 출원 시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각 국가별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04

##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 01. 지식재산권의 분쟁

현재 산업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많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면서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의 결과는 양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하고 좋은 지식재산권의 보유는 분쟁의 협상 테이블에 있어 무엇보다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유를 통한 지식재산경영은 현재 자신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도 일조하는 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위하는 사업의 운명이 달려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업 발전을 위한 보유가 아닌 사업의 생사를 위한 보유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 02. 특허 관련 분쟁사례

#### 김치 특허 사건



#### 사건의 개요

1983년 N사는 양배추를 1.3 중량% 내지 4.5 중량% 염의 존재 하에서 발효시킬 때 닭고기의 가수분해 단백질을 첨가하면 발효된 야채에서 치킨 풍미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N사는 '야채 풍미 방법'의 발명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심사단계에서는 마땅한 선행기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특허공고 되었으나 우리나라 학회와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여 배추김치 제조 시 짓갈류를 넣어 풍미를 좋게 하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 받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N사의 '야채 풍미 방법' 발명은 미국, 일본 등의 14개 출원 국가로 부터 특허를 받아 이들 국가내에서 독점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사점

한국에서만 특허출원에 실패했으나 전통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부재가 낳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음식에 대한 특허분쟁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 등록된 약용작물 관련 특허의 80%는 인도 특산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03. 상표 관련 분쟁사례

#### 정관장 사건



#### 사건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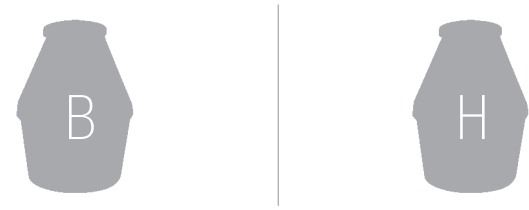
중국내 「정관장」 상표 분쟁 사건은 담배인삼공사의 거래처였던 홍콩지역 수입상인 고려삼중심(考慮參中心, 대표 조한중)이 「정관장」의 상표 및 마크를 마카오, 홍콩, 중국 지역에 무단으로 상표등록을 받음으로서 촉발되었습니다. 홍콩지역에서는 지난 97년에 홍콩법원에서 담배인삼공사가 승소함으로써 상표권을 되찾고 1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중국에서는 관계당국의 취소심판 기각, 불복신청 수리불가 판정, 상표국의 상표출원의 거절 등으로 상표권의 회복에 숱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특허청과 함께, 「정관장」 상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무려 6년의 분쟁 끝에 중국 공상행정국 소속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상표등록권자였던 고려삼중심에 대해, 정관장 상표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 공사측의 극적인 승소로 분쟁의 막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시사점

비록 담배인삼공사측의 정관장 상표의 회복으로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지만, 담배인삼공사와 특허청이 이 과정에서 들인 공을 참작하자면 해외에서의 타인에게 선점된 지식재산권의 회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04. 디자인 관련 분쟁사례

#### 바나나맛 우유 사건



#### 사건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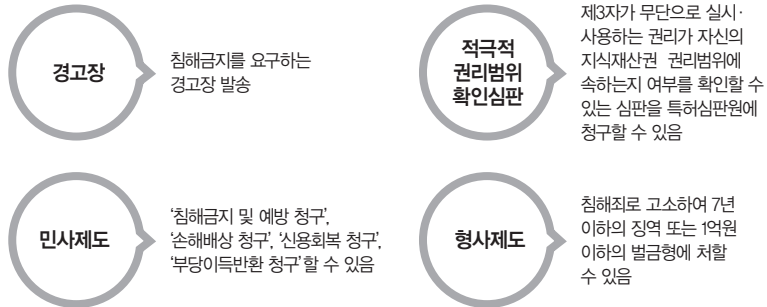
B는 1974년 '바나나맛 우유'를 생산한 이래 2억개 이상을 판매하였으며, 2001년에 입체상표를 출원하여 2003년에 상표등록되고 2004년에 포장용기에 관한 디자인출원하여 2005년에 디자인등록 되었습니다. H사는 2005년 7월부터 B사의 제품과 모양이 유사한 용기를 이용한 '생생과즙 바나나 우유'를 생산 및 판매하자 이에 B사는 H사에게 상표권 침해금지를 청구하고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H사가 단지 모양의 용기를 사용하고 바나나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므로 바나나우유 용기 및 우유제품을 생산·판매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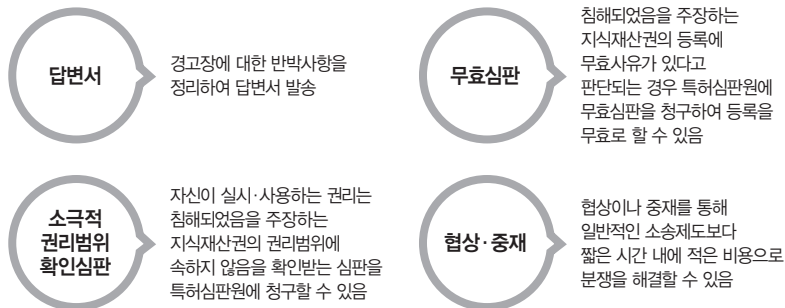
이는 B사가 제품을 출시한 이래 항아리 형태의 용기만을 30년간 일관되게 사용하고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광고 활동을 벌여 바나나우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한 결과였습니다. 즉, B사가 바나나맛 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 사용해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항아리 모양의 용기가 B사 상품임을 연상시키는 출처표시로 충분히 인식되어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 05. 구제방안

###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경우



## 06. 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지원사업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자 계층(영세상인, 중소기업 등)에게 권리 확보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 담당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홈페이지 [www.pcc.or.kr](http://www.pcc.or.kr)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시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 담당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홈페이지 [www.kipo.go.kr](http://www.kipo.go.kr)
- 분쟁조정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http://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02 세계 속의 외식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http://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01

##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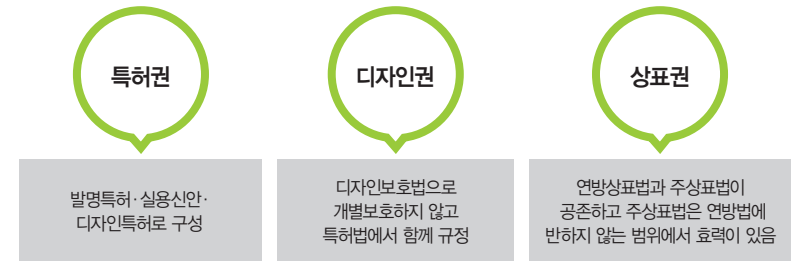
### 01. 미국 지식재산권의 체계

#### 보호법령

#### 보호체계



### 주요 지식재산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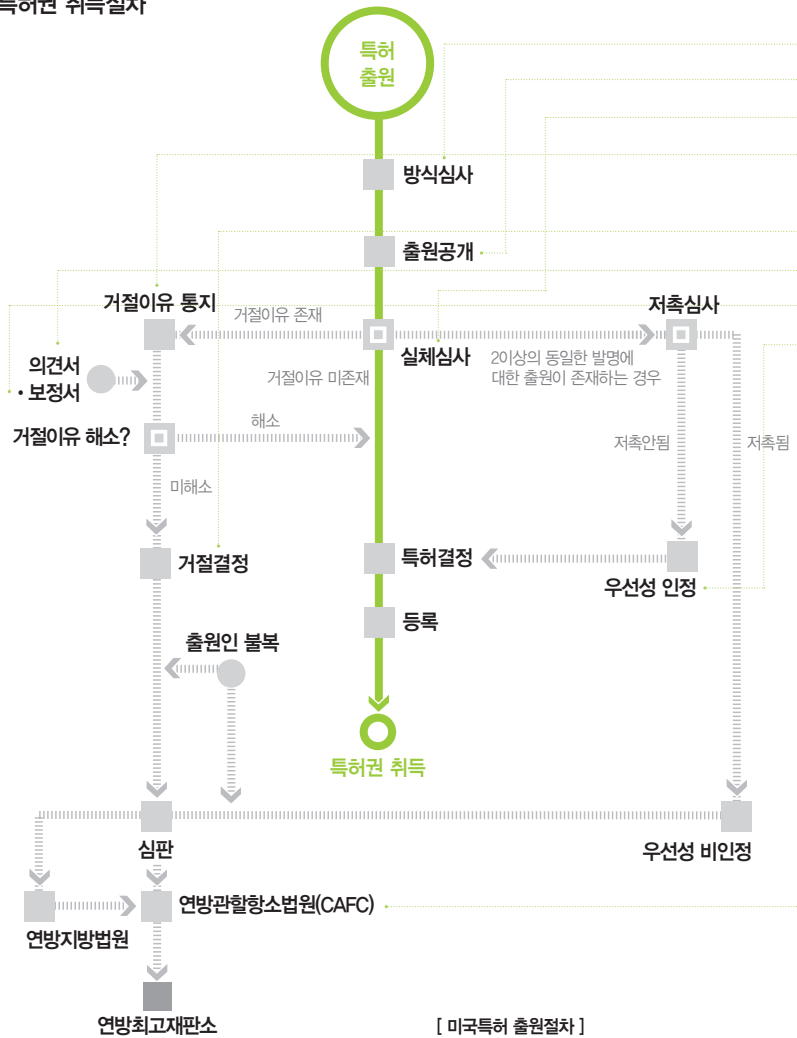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및 웹사이트





## 02.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 특허권 취득절차



[ 미국특허 출원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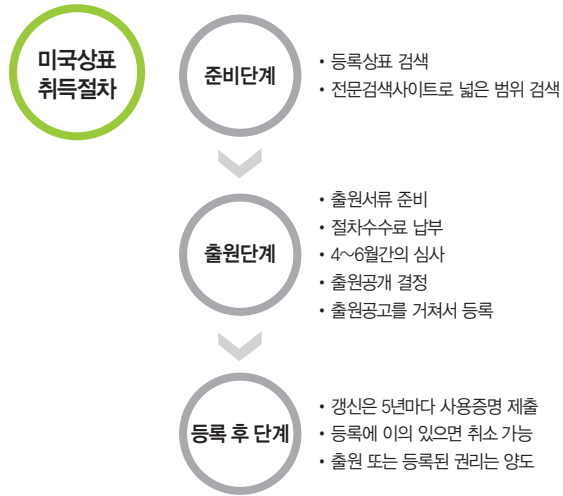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출원공개** 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출원발명을 일정 기간 후에 공보로 공중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 실체심사**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거절이유통지** 해당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하는 통지로서 최초·최후거절이유통지가 있습니다. 이에 2번의 의견서·보정서 제출기회가 보장됩니다.
- 거절결정** 법령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를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발명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우선성** 조약가입국에 선출원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선출원일로 인정받는지 여부를 말합니다.(파리조약4조B)
- 연방관할항소법원**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입니다.

### 미국특허권 취득절차의 특징

- 출원인은 발명자 뿐만 아니라 발명의 양수인도 가능
- 출원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열거한 정보공개서(IDS)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우선권 향유가 가능 (타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동일발명에 대해 출원일이 타국 출원일로 인정)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 최후거절이유 통지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최초거절이유가 치유되지 않으면 항상 주어진

### 상표권 취득절차



### 상표권 취득절차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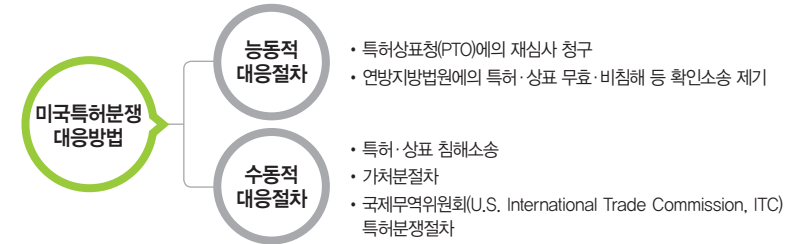
내용	세부내용
사용증거의 제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할 의사가 있는 상표도 출원 가능
트레이드 드레스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동일한 법적보호
혼동가능성 판단	상표간 유사성과 상품간 유사성으로 판단
포기상표 회생신청	출원포기상표를 회생시키는 신청

\*디자인권은 특허권으로 일괄되어 규정되며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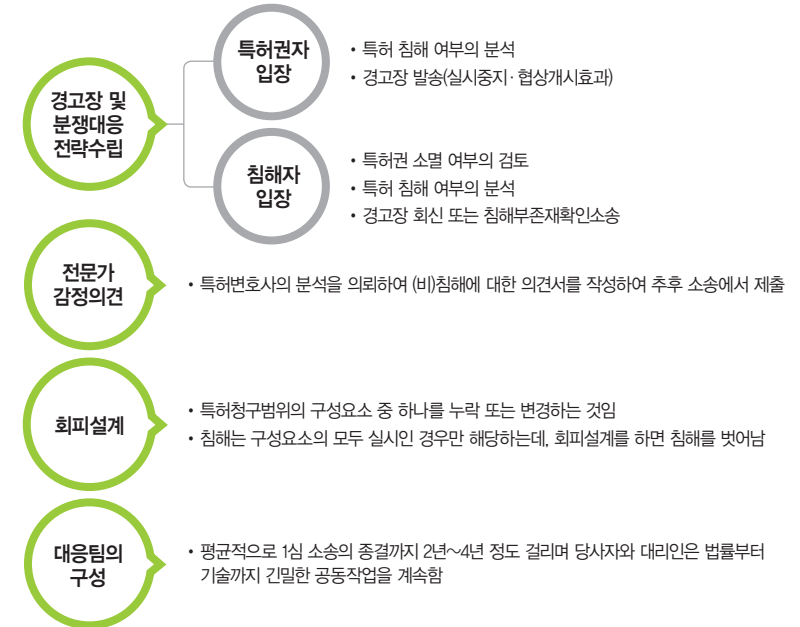
## 03.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 특허분쟁의 특징

미국에서 특허·상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협상 또는 소송입니다.



### 침해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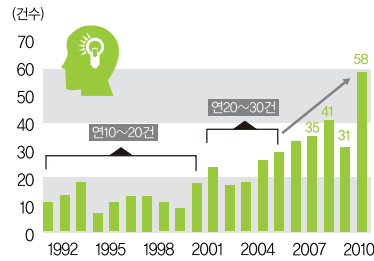
## 04. 미국 진출 시 유의사항

### 특허 분쟁 현황 및 특징

특허의 수가 기업가치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인식됨에 따라 특허 쟁탈전이 미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기업들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 미국특허소송 건수 】  
(미국특허소송 건수 - 출처 : Ludlow, T. (2011), Trends in US patent litigation,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Magazine, 48.)



【 ITC제소 건수 】  
(ITC제소 건수 - 출처 : Ludlow, T. (2011), Trends in US patent litigation,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Magazine, 48.)

또한, 미국에서는 소송의 나라답게 빈번하게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액의 손해배상	고의침해의 경우, 3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므로 경고 시 반대대응의 필요
강력한 법률 적용	침해는 의도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률위반으로 취급
NPE 출현과 미국의 소송문화	NPE(특허전문관리기업)는 소송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기업으로 각종 소송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소송문화에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지식재산권 확보 시 유의사항

미국은 다방면에서 자신들만의 제도를 고수하는데 지식재산권 제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권리 확보 시 몇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사용의 자료제출	미국은 사용주의 국가로 상표등록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함
트레이드 드레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표·디자인과 달리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외장의 복합적요소를 말하며, 미국은 상표법에서 이를 보호함
비전형 상표의 보호	국내상표법도 최근에 소리·냄새상표를 보호하도록 입법했으나, 미국은 이전부터 상표로 보호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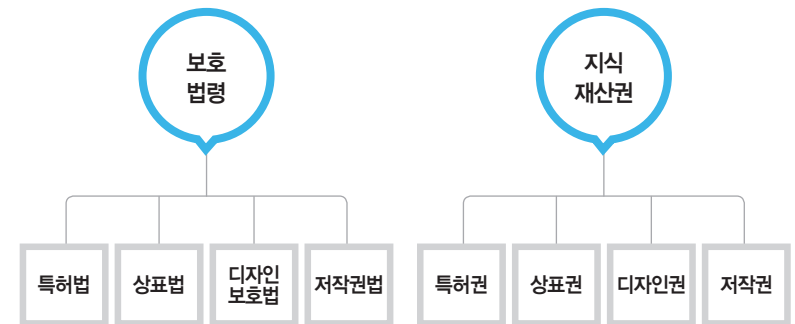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02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01. 일본 지식재산권의 체계

### 보호법령

### 보호체계



## 주요 지식재산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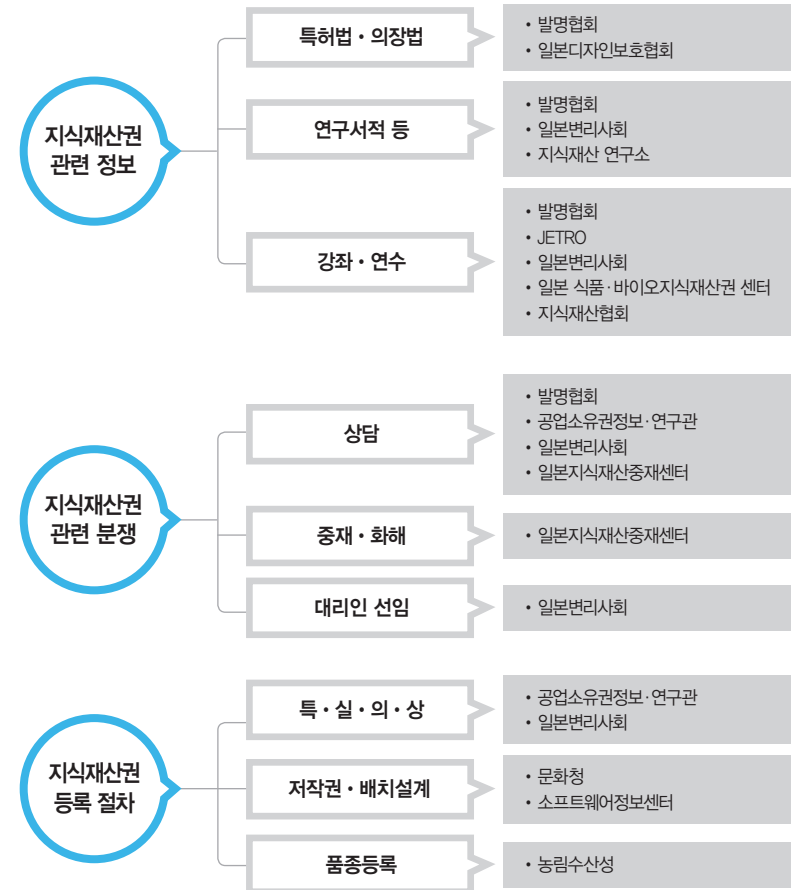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특허청	• 지식재산권 출원과 심사·등록 이후 총괄적인 관리	• 국제협력 및 교류
	• 특허권 등의 적절한 부여	• 지식재산권 제도의 보완
	• 지식재산권 사책의 기획입안	• 지식재산권 정보의 확충

## 지식재산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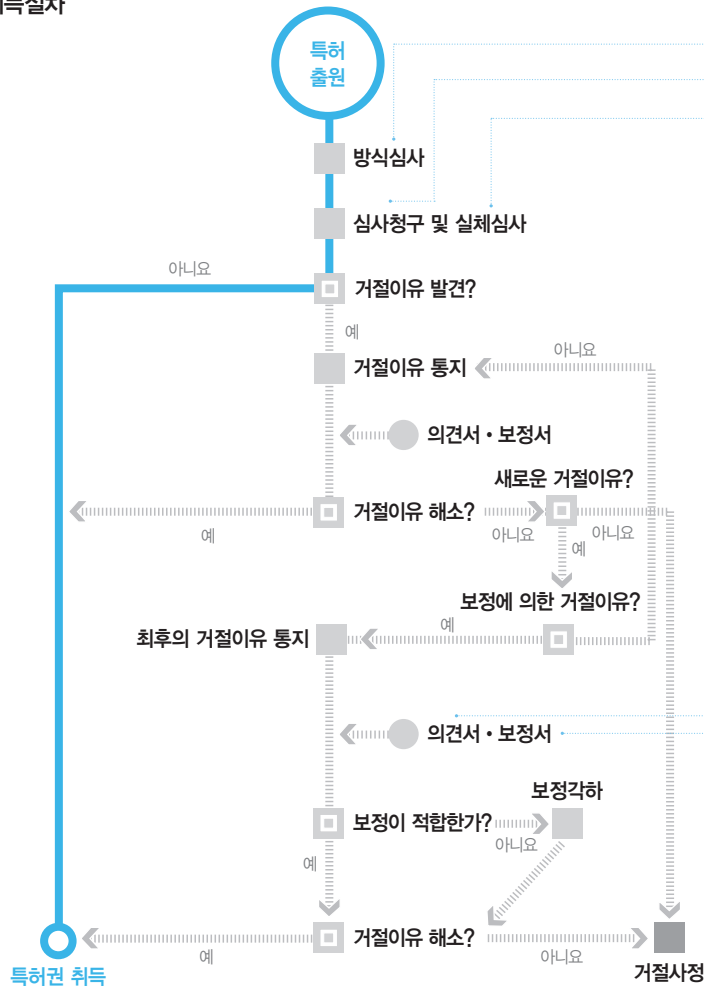
지식재산 유관기관 명칭	웹사이트 주소	내용지식재산 유관기관 명칭	웹사이트 주소
사단법인 발명협회	<a href="http://www.jiii.or.jp/">http://www.jiii.or.jp/</a>	JETRO	<a href="http://www.jetro.go.jp/">http://www.jetro.go.jp/</a>
지식재산 전략추진사무국	<a href="http://www.ipr.go.jp/">http://www.ipr.go.jp/</a>	소프트웨어정보센터	<a href="http://www.softic.or.jp/">http://www.softic.or.jp/</a>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	<a href="http://www.inpit.go.jp/">http://www.inpit.go.jp/</a>	일본변리사회	<a href="http://www.jpaa.or.jp/">http://www.jpaa.or.jp/</a>
일본지식 재산중재센터	<a href="http://www.ip-adr.gr.jp/">http://www.ip-adr.gr.jp/</a>	일본디자인보호협회	<a href="http://www.jdpa.or.jp/">http://www.jdpa.or.jp/</a>

## 지식재산 유관기관 가이드맵



## 02.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 특허권 취득절차



[일본특허 출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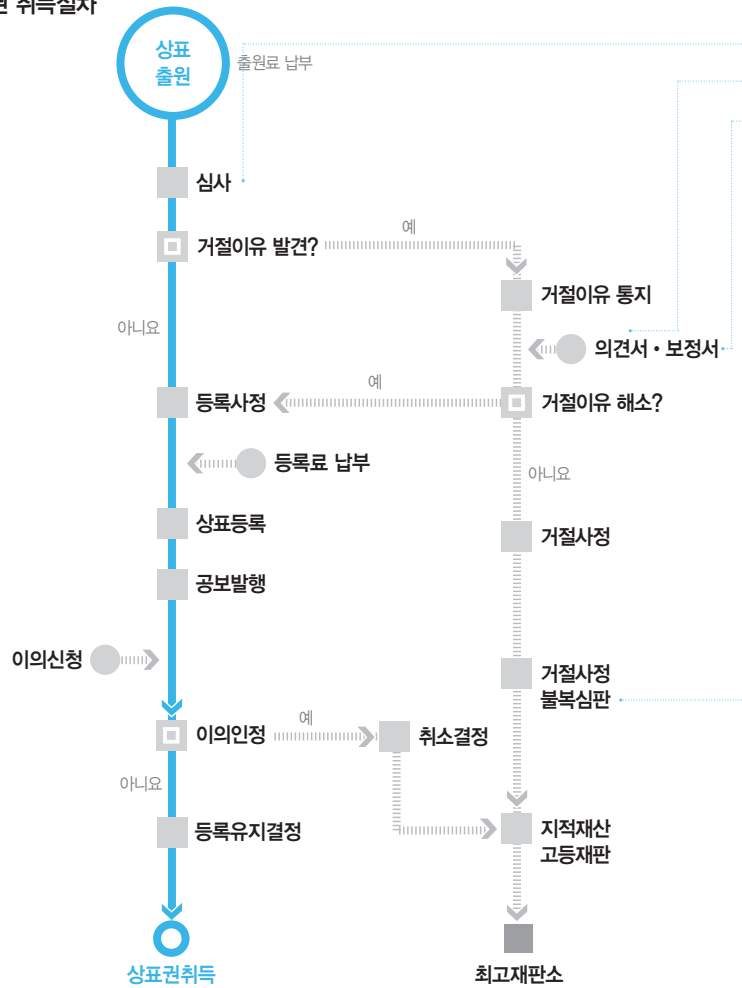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 실체심사** 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발명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일본특허권 취득절차의 특징

- 외국어 서면출원 시 일본어의 번역문을 그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
- 우선권 향유가 가능 (타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동일발명에 대해 출원일이 타국 출원일로 인정)
- 심사청구료의 반환 (심사청구후라도 심사착수 전에 출원을 포기·취하하면 심사청구료의 반액을 반환)
- 프로그램 청구항 및 다중 종속항 허용
- 가실시권등록제도(출원단계에서 실시권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 상표권 취득절차



[ 일본상표 출원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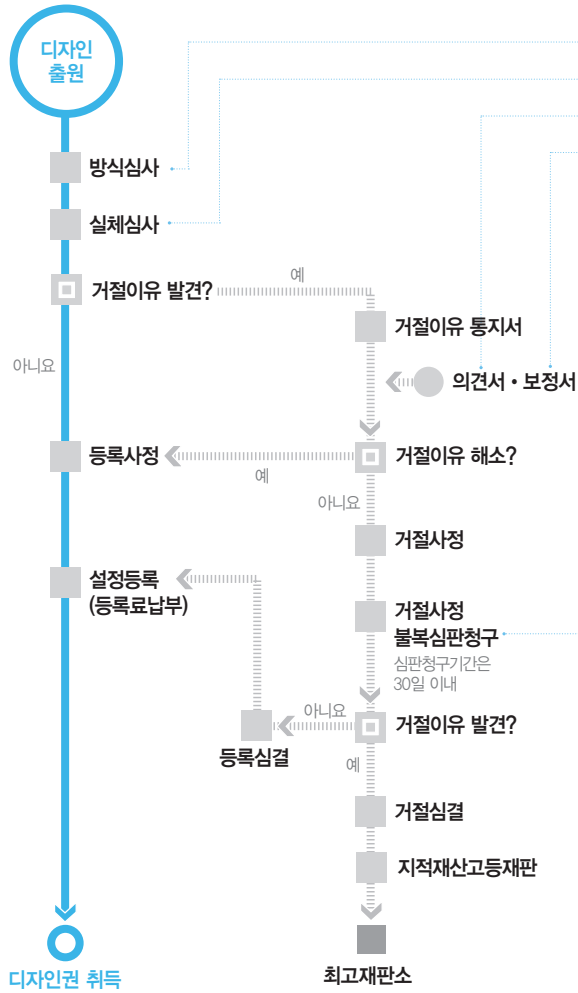
### 취득절차의 설명

- **심사**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상표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불복심판** 거절사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심판에서 심리 결과 등록심결이 나오게 되면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이 됩니다.  
거절심결이 내려질 경우 동경고등재판소에 불복하고 이 단계에서도 패소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 다투게 됩니다.

### 일본상표권 취득절차의 특징

- 다류출원제도(한 건의 출원서에 여러 류의 지정상품을 지정)
- 상표갱신 시 실체심사 및 사용사실 확인이 폐지
- 3차원 입체상표 인정
- 연합상표제도가 폐지
- 단체상표제도 도입
-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존속기간을 갱신)

## 디자인권 취득절차



[ 일본디자인 출원절차 ]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실체심사** 출원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디자인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불복심판** 거절사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심판에서 심리 결과 등록심결이 나오게 되면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이 됩니다.  
거절심결이 내려질 경우 동경고등재판소에 불복하고 이 단계에서도 패소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 다투게 됩니다.

일본 디자인권 취득절차의 특징

- **촉진심사제도**  
(제3자가 허가없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등의 이유로 출원인이 불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에 권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
-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

### 03.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 분쟁 대응방법

##### 분쟁 대응 방법

- 재판소에 있어서의 임의의 해결(1-화해)
- 재판소에 있어서의 임의의 해결(2-가처분 수속 화해)
- 재판소에 있어서의 임의의 해결(3-지식재산권전문조정)
- 재판에 의하지 않는 법적 분쟁해결(ADR)

#### 침해의 대응방법

##### 소송제기 전 조치

- 침해품의 입수 및 분석·검토
- 경고장의 발송
- 사전 접촉
- 증거보전절차

##### 소송의 진행

- 소송 목적의 결정
- 변호사·변리사의 선임
- 협상과 병행
- 소송 외 수단의 활용(일본의 비정부기관인 일본지식재산 중재센터는 신청에 의해 조정 및 중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서로 합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함)

#### 권리대항을 받은 경우의 대처

##### 권리대항을 받은 경우의 대처

- 협상의 진행여부결정
- 침해증거의 요청
- 무효조서 및 침해검토
- 대응특허 및 권리자의 배경 조사
- 협상의 진행
- 회피설계
- 법적대응

### 04. 일본 진출 시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및 유의사항

- 일본의 제도는 국내의 제도와 매우 흡사하여 국내 제도를 잘 이해하면 일본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또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매우 안정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 일본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식재산권 동향 및 특허정보의 조사

- 일본은 오래 전부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이 기술력은 특허출원으로 이어져 엄청난 특허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시장에서 앞지르게 되면서 위협을 느낀 일본은 자신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할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채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해 대규모의 지식재산권 공세가 예상되며 특허가 많은 일본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특허정보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특허정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조사목적 결정

특허조사가 피해예방책 또는 상품개발 목적인지 정하여 조사범위를 결정

##### 조사범위 결정

권리별로 또는 특정 출원인별로 범위를 결정하면 효율적 조사가 가능

##### 조사방법 선택

특허도서관(PDL) 및 유료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조사업체에 의뢰 가능

##### 조사결과 활용

문제가 될 만한 권리를 선별한 후에 심층분석하여 피해방지대책 수립

#### 수출입금지신청제도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일본내 반입 및 반출을 세관에 의해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 신청자가 권리자일 것
- 유효하게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을 것(출원중인 경우에는 불인정)
- 침해의 사실이 있을 것(수입되어있거나 수입이 예견되는 경우)
- 침해사실을 소명할수 있을 것(침해품 또는 카탈로그·사진의 제시와 판결문·감정서 등의 제출 필요)
- 세관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식별정보의 제공 필요)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03

##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01. 중국 지식재산권의 체계

#### 보호법령

#### 보호체계



#### 주요 지식재산권 소개

##### 전리권

발명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로 구성

##### 상표권

상표·지리표시·서비스표·  
증명상표·단체표장

#### 전리권 담당기관

전리출원 담당 정부기관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며, 지식재산권국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도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국	성급(성/자치구/직할시) 전리업무관리부(=성급 지식재산권국)
전리출원의 접수·심사 및 등록업무	· 전리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 및 조정 · 전리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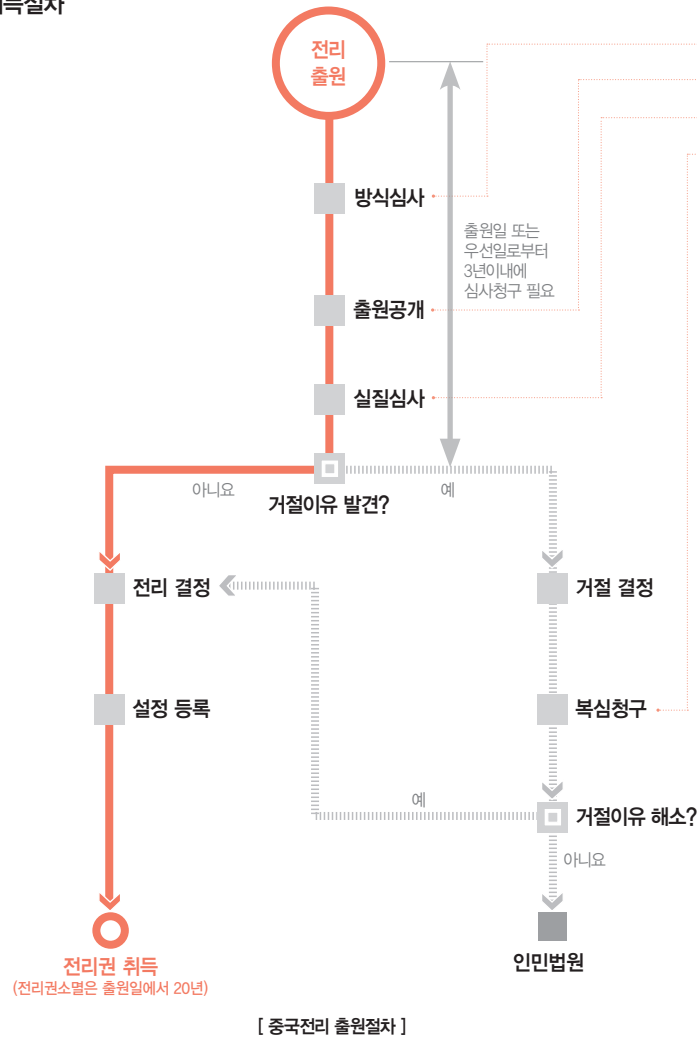
#### 상표권 담당기관

상표출원 담당기관은 상표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상표업무가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공상행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 상표국	지방 공상 행정 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출원의 접수·심사 및 등록업무</li> <li>· 등록상표의 임의 변경 사용·등록사항의 임의 변경·임의 양도·3년 이상 불사용시 상표등록의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상표의 허위표시·사용금지 상표의 사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처리)</li> <li>· 제품품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li> </ul>

## 02.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 전리권 취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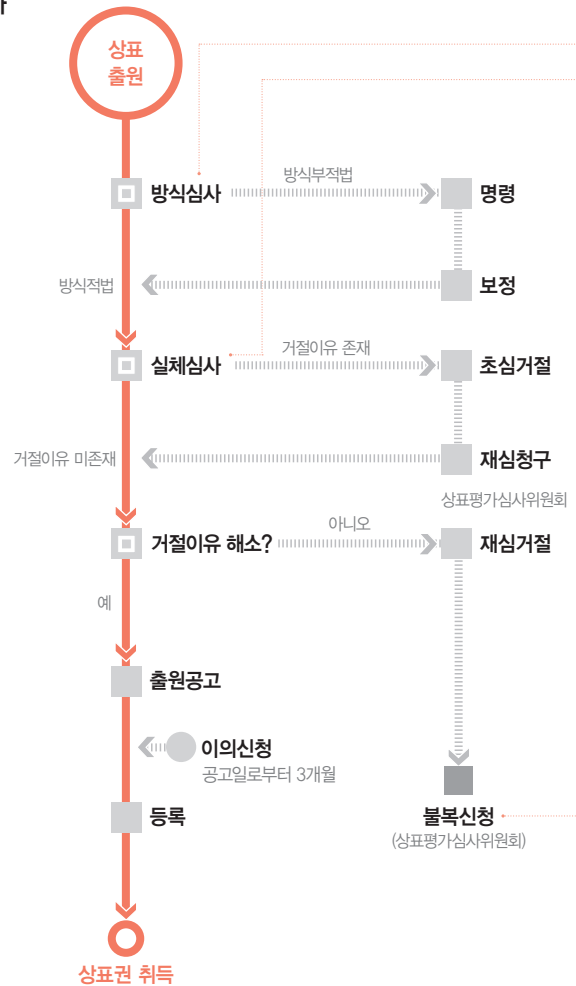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출원공개** 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출원발명을 일정 기간 후에 공보로 공중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 실질심사**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복심청구** 거절사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심판에서 심리 결과 등록심결이 나오게 되면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이 됩니다.  
거절심결이 내려질 시 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 중국전리권 취득절차의 특징

- 출원서류는 중국어로 작성
- 우선신청의 원칙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동물품종·식물품종·인간배아줄기세포 등에 대해서는 전리권을 받을 수 없으며, BM 특허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음)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조기공개 및 우선심사  
(출원인 신청으로 조기공개되면 일정한 보호가 됨. 또한, 우선심사제도가 없음)
- 부분디자인·화상디자인 제도가 없음
- 검색보고서제도  
(중국의 실용신안과 디자인출원은 무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됨. 이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기관에 전리국의 '검색보고서'를 제출)
- 존속기간은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10년

## 상표권 취득절차



[ 중국상표 출원절차 ]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실체심사**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불복신청** 거절사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심결이 내려질 경우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불복하고 이 단계에서도 패소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할 인민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 중국 상표권 취득절차의 특징

-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임(10년마다 존속기간을 갱신)
- 중국 상표국은 만약 규정에 위반되게 상표를 사용할 때는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음

### 상표권에 의해 상표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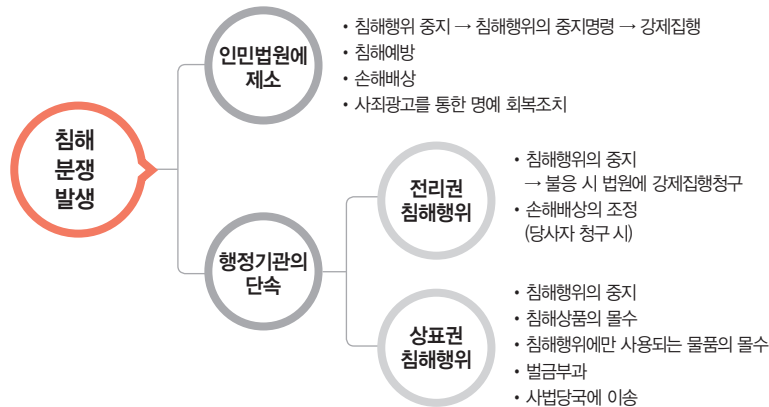
- 등록상표를 임의로 개변하여 사용하는 경우
- 등록상표의 등록인명의 주소 또는 그 밖의 등록사항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
-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 03.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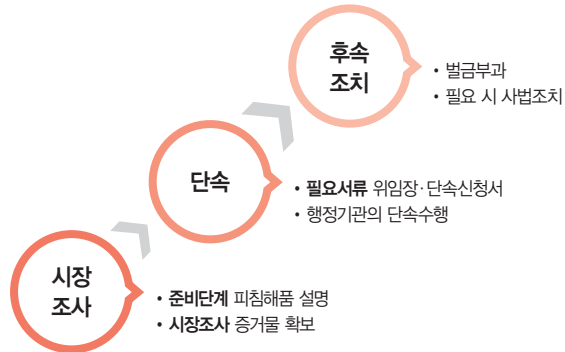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 중국은 전리법 상에서 행정보호와 사법보호를 병행하는 '쌍궤제'를 채택하였습니다.(1984년)
- 조잡하게 만든 상품에 등록상표 사용 시 행정적 처벌을 받으며 상표등록이 취소됩니다.

#### 쌍궤제 진행 절차 비교



#### 항쟁분쟁(행정단속)의 절차



### 04. 중국 진출 시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현황과 리스크

- 중국에 출원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2008년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약 3.4배에 해당하며, 상표의 경우에 이 비율이 약 3.6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출원량으로만 따지더라도 중국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은 한국 시장보다 3배 이상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역으로 중국은 전 세계 모조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도 3배 이상 높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리스크는 중국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지식재산 업무 진행 시 유의사항

- 대리인의 선정 (특허출원 시)**
  - 설립한지 최소 5년이 경과하였을 것
  - 최근 현저한 인력 이동이 없었을 것
  - 나의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외국기업의 사건을 취급한 지 적어도 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일년에 취급한 외국기업의 사건이 500건 이상일 것
  - 첨예한 경쟁기업의 사건을 대리하고 있지 않을 것
  - 가능하면 한국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곳을 선정할 것
- 대리인의 선정 (상표출원 시)**
  -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할 것
  - 설립연도가 2003년 이전의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 전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가 있다 하더라도 상표업무를 잘 하는 사무소를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상표대리인을 확보하고 있는 사무소를 선택할 것
  - 가능하면 한국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곳을 선정함
- 심판소송 시**
  - 전리나 상표에 관한 모든 심판에는 기한이 준수되어야 함
  - 무효를 다투는 당사자에게 심판이라 하더라도 무효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심판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음
  - 분쟁의 당사자가 화해하고자 한다면 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행정소송 시**
  - 상표평가심사위원회나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재정)에 불복하는 무효 사건의 소송에서는 심판단계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며 상표평가심사위원회나 전리복심위원회가 피고가 됨
  - 소송단계에서는 심판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음
  - 무효라는 심판결정을 뒤집고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심판단계에서 미처 심리되지 않은 무효사유가 다시 심리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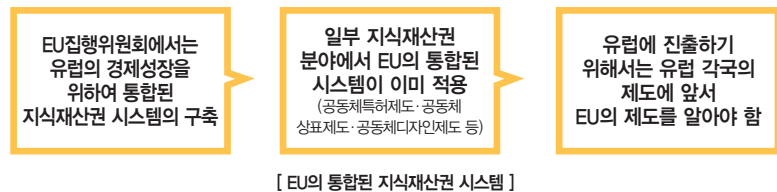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04

## 유럽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01. 유럽 지식재산권의 체계

#### EU의 지식재산권 체계



#### 보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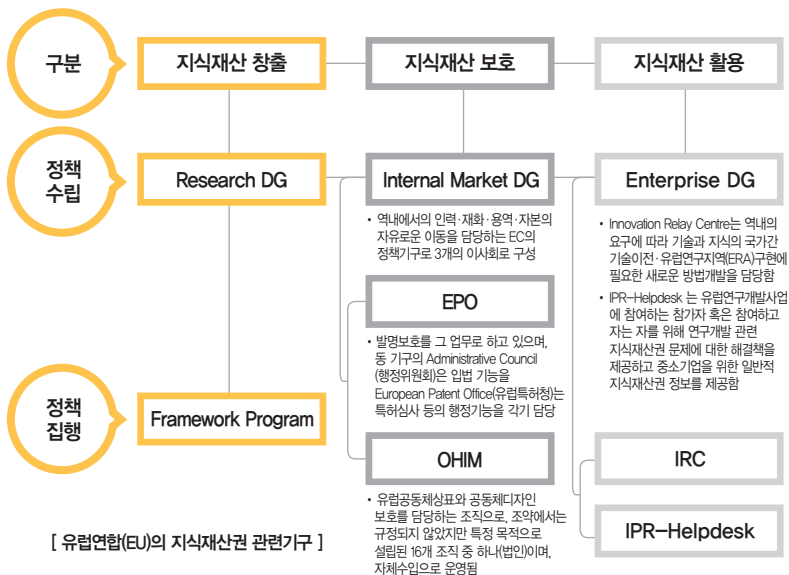
#### 보호법령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일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EU의 통합된 시스템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체특허제도, 공동체상표제도, 공동체디자인제도 등) 각국법령에 의한 보호와 유럽공동체(EU) 수준의 보호로 나누어지고, 계속 지식재산제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각국제도	EU수준의 보호제도
저작권	• 부분적으로 협정하고 있음	• 없음
상표	• 실제적으로 협정하고 있음	• 공동체상표제도가 있음
의장(디자인)	• 실제적으로 협정하고 있음	• 공동체의의장제도가 있음
특허	• EPC에 의한 일부, 협정하고 있음	• 없음(EU범위 외에 EPC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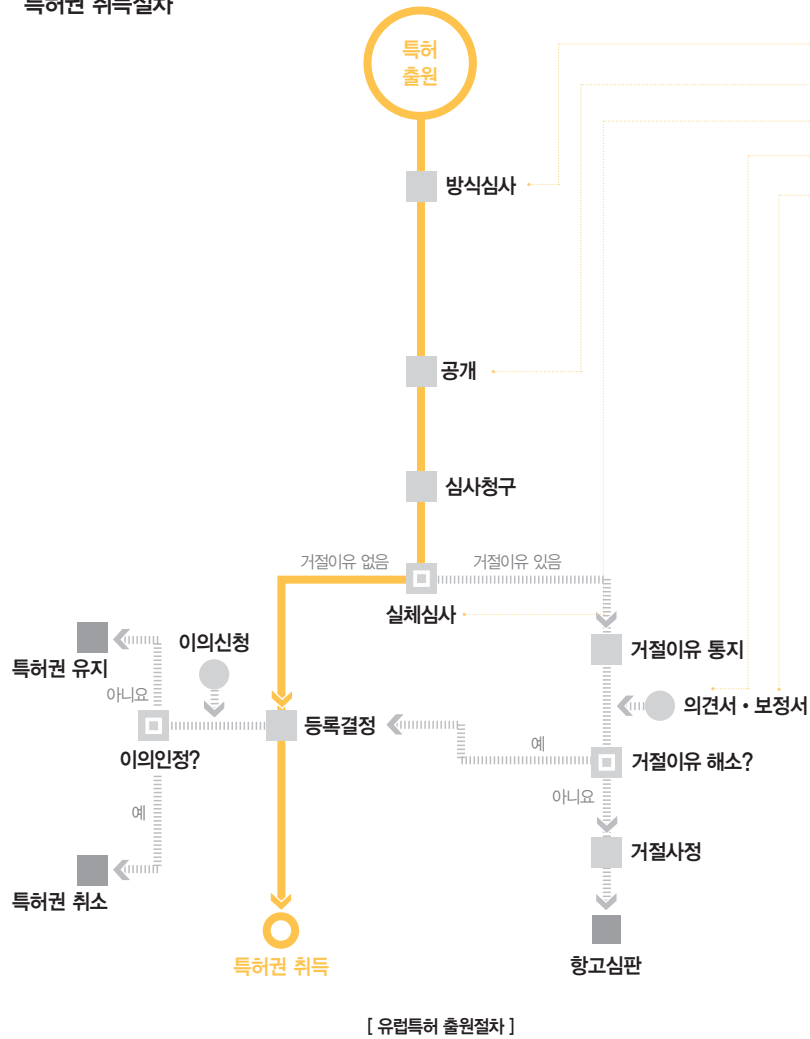
[ 각국의 제도의 협정상황과 EU수준의 보호제도 유무 개요 ]

####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 02. 유럽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 특허권 취득절차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공개** 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출원발명을 일정 기간 후에 공보로 공중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 **실체심사**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발명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유럽 특허권 취득절차의 특징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가 곧 실현될 예정
- 청구범위는 영어·독어·불어로 작성됨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 유럽공동체상표권(CTM, Community Trademark)

#### 취득절차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절차]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유럽공동체조사** 선행하는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이나 등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상표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유럽공동체상표권 취득절차의 특징

- 상표등록출원서는 각 회원국의 특허청이나 유럽공동체상표청(스페인의 알리칸테)에 제출해야 함
- 각 회원국의 특허청에서 접수한 유럽공동체상표권(CTM)출원은 2주내에 유럽상표청으로 송부하게 됨
- 출원은 EU의 공용어로 할 수 있고 이 출원에 사용하는 언어를 '제1언어'라고 함
- '제2언어'를 유럽상표청(OHIM)의 공용어로부터 선택할 필요가 있음 (EU의 공용어는 22개)
-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의 대상이 됨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 03. 유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 지식재산 분쟁 대응

- 2004년 유럽연합은 EU세관의 활동을 조율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 EU단일시장(single market)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EU공동체로 반입되는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목	한국	EU
보호대상	· 상표권 ·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저작권 · 특허권 · 식물종자권 · 원산지표시 · 지리적표시
담보 필요 여부	· 침해 우려 물품의 통관보류 시 담보제공	· 무담보 · 권리자의 보증만으로 조치 신청 가능
물품 폐기 가능 여부	·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폐기를 위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 지식재산 침해 우려 물품의 신고자 및 보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폐기

[ 우리나라와 EU의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차이점 - 통관보류 절차의 차이 ]

#### EU통관보류의 요건

**통관보류 단속대상 물품**

- 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 식물종자권 침해 물품
- 원산지 표시 침해 물품
- 지리적 표시 침해 물품

**세관 조치의 요건**

- 다음의 경우, 권리자나 신고자에게 알린 시점부터 3일간 물품의 유통을 정지시키거나 압류할 수 있음
  - 물품이 유통·수출 혹은 재수출을 위해 공동체 내로 수입된 경우
  - 세관원의 물품 검사도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의심이 가는 경우

#### EU통관보류의 절차



#### 유럽공동체상표(CTM) 침해 대응방안



[ 유럽공동체상표(CTM)에 관한 소송구조 ]



## 04. 유럽 진출 시 유의사항

### 유럽공동체상표(CTM) 출원 시 유의사항

- 비용의 절감**
  - 단일출원(한 통의 원서)으로 EU의 전 가맹국에 출원 가능하고 대리인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므로, EU가맹국이 많은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들
- 수속의 간소화**
  - 단일의 수속으로 EU가맹국 모두에게 출원된 것이 됨
  - 목적비용(일본의 특허사무소의 비용)이 복수의 EU가맹국에 직접 출원했을 경우에 비해 염가로 됨
- 권리 관리의 간편화**
  - 상표등록 후의 갱신이나 변경 등의 수속이 한 번에 끝나므로 관리가 간단함
- 미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의 회피가 용이**
  - 가맹국의 1개국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이 삭제되는 경우는 없음
- 거절의 효과**
  - EU가맹국의 어느 쪽이든 한 나라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고,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해서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취소·무효의 효과**
  - EU가맹국의 어느 쪽이든 한 나라에서라도 등록상표가 취소·무효가 되어버렸을 경우 다른 EU가맹국의 권리까지 소멸하게 됨
- 제약 조건**
  - EU가맹국 중 일정국가만을 지정해 출원할 수 없음(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만을 제외하고 출원 할 수 없음)

- 심사**
  - 원칙적으로 '상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되지 않음
- 제1언어, 제2언어의 선택**
  - 이의제기·취소심판·무효심판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유럽상표청(OHIM)의 공용어임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 출원인은 제1언어 또는 제2언어를 유럽상표청(OHIM)의 공용어 중 선택해야 함
  - 유럽상표청(OHIM)의 공용어 중에서 가장 주된 언어는 영어임
  - 국제등록출원(마드리드프로토콜) 제도를 이용해 유럽공동체상표출원을 할 수도 있지만, 원서는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1언어는 '영어'가 되는 점에 주의

### 유럽공동체디자인(RCD)출원 시 유의사항

- 디자인의 경우 각 국가별 보호 이외에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해야 합니다.

하나의 법률체제 적용	보호범위는 유럽연합전역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범위가 넓어짐
디자인 공개 유보의 권리	30개월동안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등록사실을 모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	유럽공동체 디자인 (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	비등록공동체 디자인 (UCD,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등록기구	• 유럽디자인상표청	• 각국 디자인 등록 관청
보호되는 권리	• 독점·배타권 동일한 디자인을 가진 물품의 제조·대여·진열·수입·수출·사용·저장 금지	• 복사 금지 상업적으로 동일 디자인을 모사(copy) 사용 금지
보호기간	• 5년의 존속기간 • 최대 25년	• 공중이 처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출원절차	• 출원 시 등록된 권리로 보호됨	• 출원절차 없음 • 분쟁 시, 권리 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

[ RCD와 UCD의 비교 ]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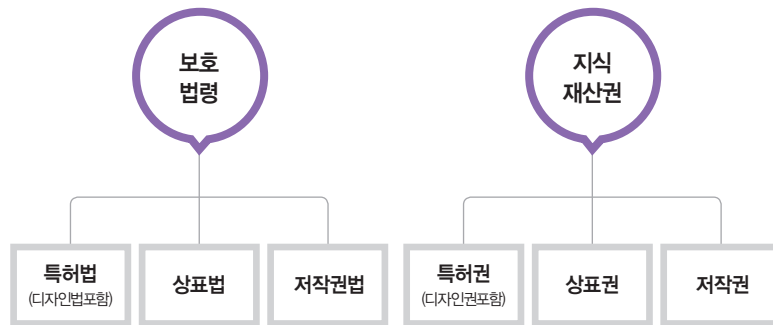
# 05

##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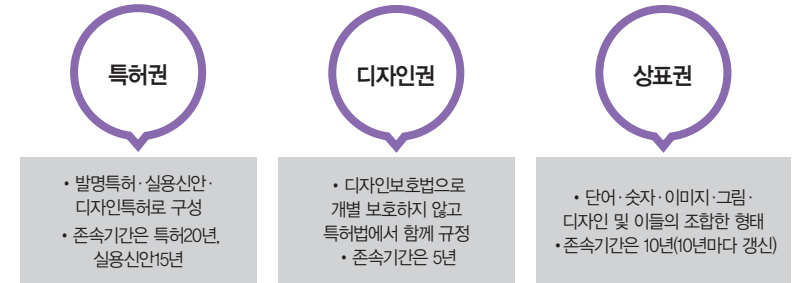
### 01. 베트남 지식재산권의 체계

#### 보호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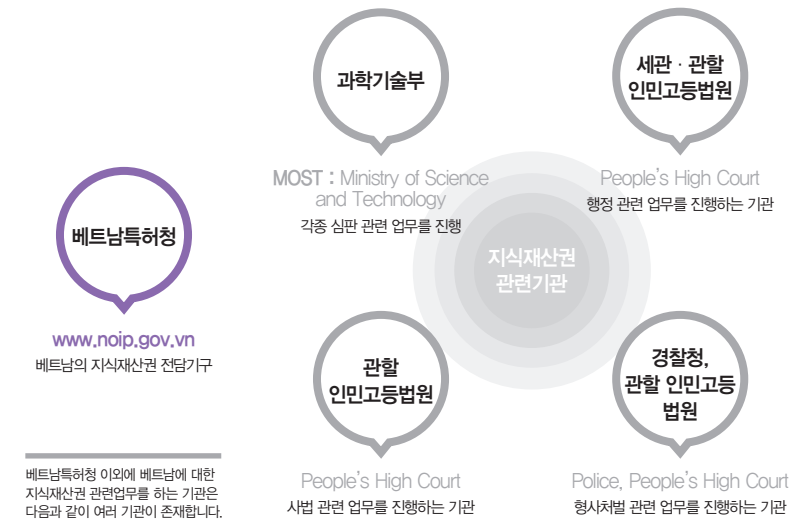
#### 보호체계



### 주요 지식재산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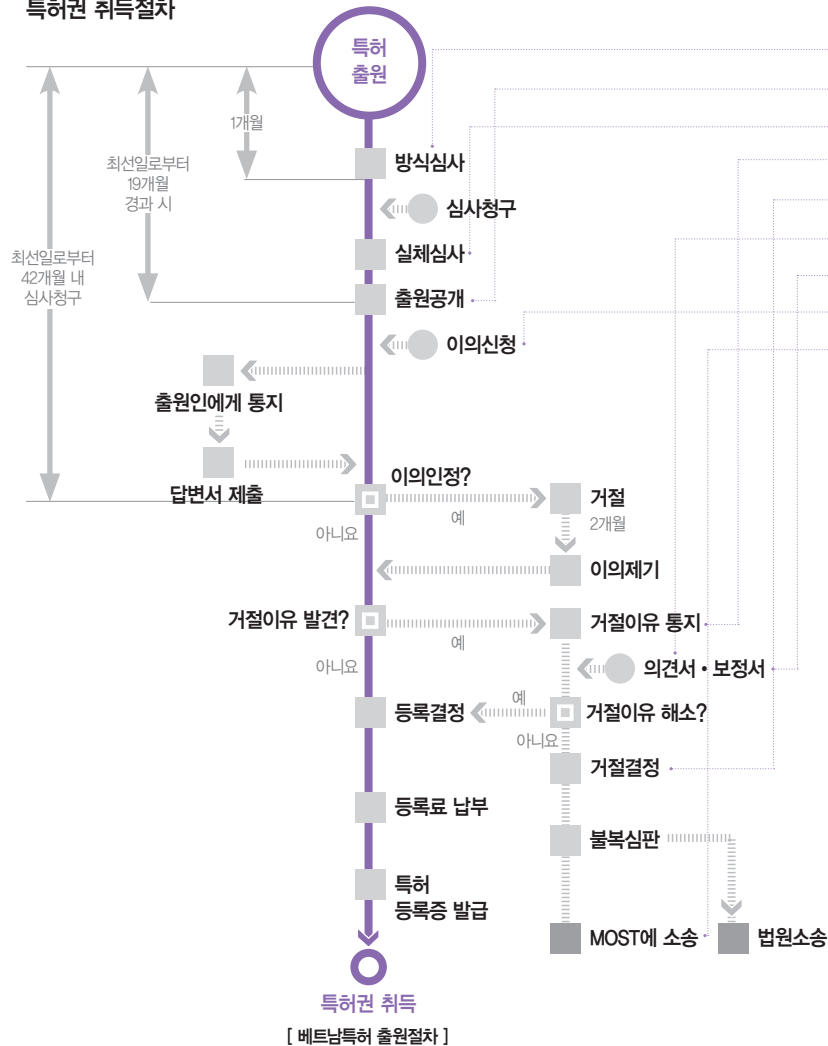
### 특허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베트남특허청 이외에 베트남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이 존재합니다.

## 02.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 특허권 취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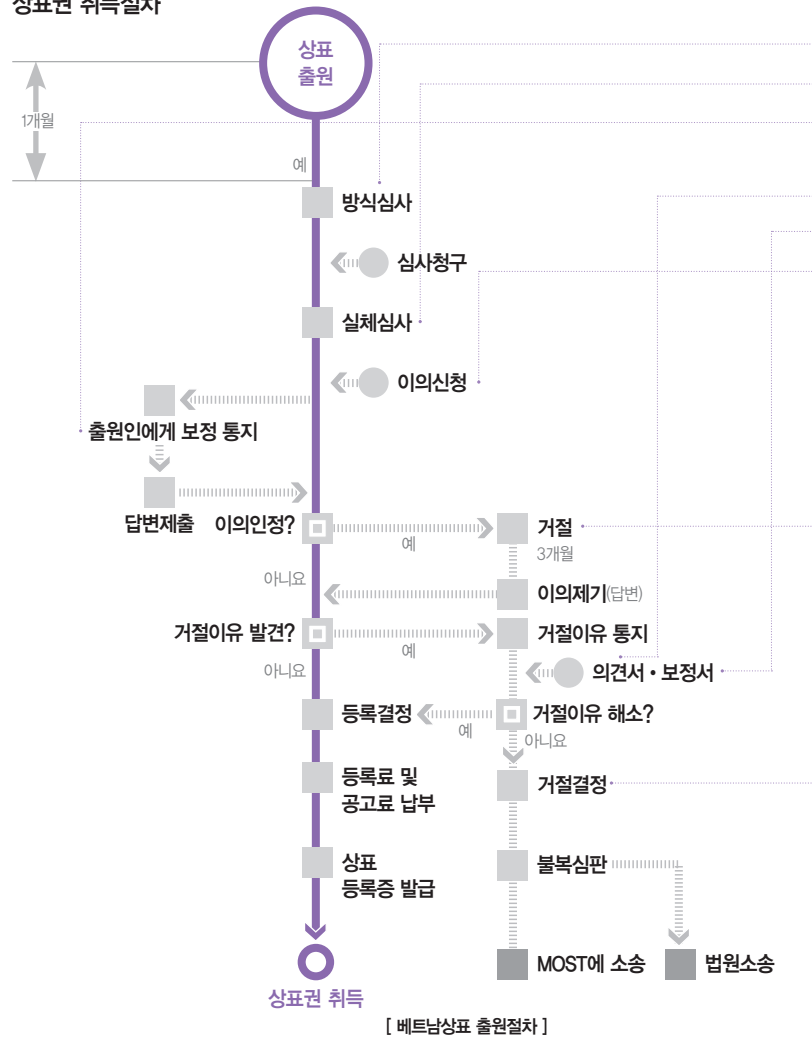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출원공개** 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출원발명을 일정기간 후에 공보로 공중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 **실체심사**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거절이유통지** 해당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하는 통지입니다.
- **거절결정** 법령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발명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이의신청**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 **MOST(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부로 각종 심판업무를 담당합니다.

### 우리나라와의 절차상의 차이점

항목	대한민국	베트남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또는 그 이전에 조기공개	·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 경과 (이의신청목적)
심사청구 기간	· 출원일로부터 특허-5년, 실용신안-3년	· 최우선일로부터 특허-3년6개월, 실용신안-3년
실용신안의 진보성 요건	· 크히 용이성을 요구	· 필수요건이 아님
디자인권의 보호	· 디자인보호법에서 개별 보호	·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로 함께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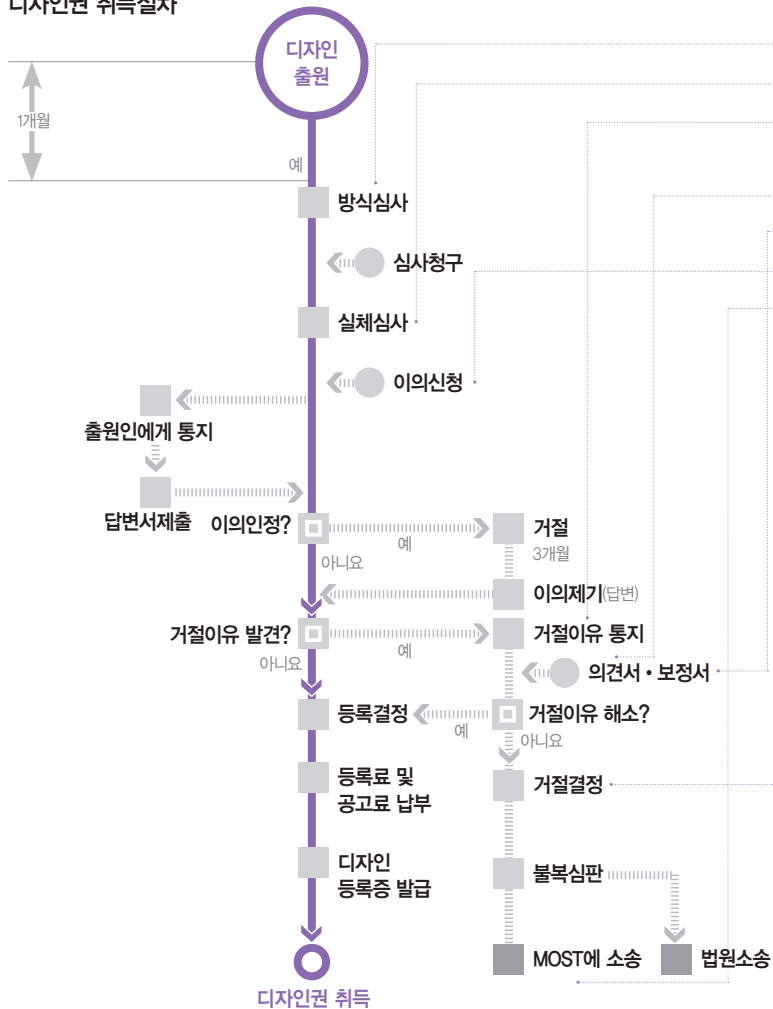
### 상표권 취득절차



### 취득절차의 설명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실체심사** 출원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보정통지** 해당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어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 거절(결정)** 법령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등록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이의신청**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 디자인권 취득절차



[ 베트남디자인 출원절차 ]

### 취득절차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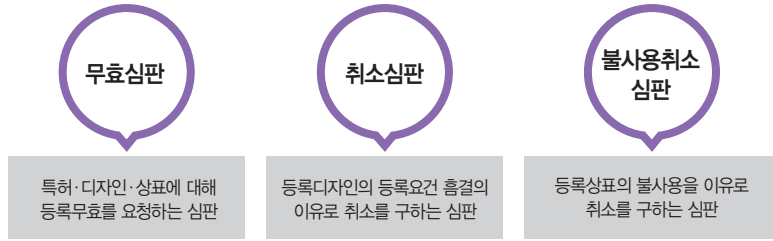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실체심사** 출원디자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거절이유통지** 해당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하는 통지입니다.
- 거절(결정)** 법령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디자인특허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디자인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이의신청**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 MOST(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부로 각종 심판업무를 담당합니다.

### 디자인권의 유의점

디자인권은 특허법으로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보호받고 있음

### 03.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 심판에 의한 보호



#### 행정적 보호

<b>정부기관 보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관 · 경찰 · 시장운영관청에서 주관</li> <li>· 감금 · 압류 · 수색의 사전처벌과 범칙금 · 압수 · 영업중지의 사후처벌</li> </ul>
<b>수출입통제</b>	·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의 경우 통관의 임시정지가 가능

#### 형사적 보호

<b>담당기관</b>	· 경찰청 · 관할 인민 고등법원
<b>형사처벌 종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지식재산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거나 사용할 경우,</li> <li>· 베트남 화폐로 20,000,000동(미화 14,000불)~200,000,000동(미화 140,000불)의 벌금</li> <li>· 6개월에서 3년 간의 구금형(베트남 형사법 171조)</li> </ul>
<b>절차</b>	· 소제기 → 공개조사 → 기소 → 항고

#### 지적재산권 보호기관

<b>산업재산권청(NOIP)</b>	· www.noip.gov.vn
<b>저작권사무소</b>	· www.cov.org.vn
<b>하노이 IP-DESK</b>	· 신지문/84-4-3724-5203/jdshin@kipra.or.kr

### 04. 베트남 진출 시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베트남에는 위조 상품이 보편화되어 있고, 베트남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인식이 부족하여 등록현황도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불리한 환경 때문에 현지 진출 기업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에서 시장관리국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용이하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IP-Desk나 외국대형판매회사를 통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현지인들의 시장경제의 몰이해, 토지소유 불능 및 높은 대출금리로 현지 금융활용 저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대응 시 유의사항

- 베트남에서도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민사, 형사, 행정 구제가 모두 가능하나 민사, 형사 구제는 인력, 전문성, 처리기간 등의 문제로 사건처리의 준비가 미흡합니다.
- 따라서, 상기 이유와 더불어 사회주의국가 체제의 특성상 사법기관보다는 행정구제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기업들에게 행정기관 이용이 요구됩니다.
- 특허침해 제품 단속은 일반적으로 시장관리국이 수행하므로 이 기관의 이용이 효과적입니다.
- 행정구제 관련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기관	주요특징
<b>인민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IP에 관한 침해문제를 단속</li> <li>· 경험이 적고 장기간 소요</li> </ul>
<b>시장관리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 지리적 표시 · 상호 및 산업디자인 침해 단속</li> <li>· 인력 풍부</li> </ul>
<b>경제경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한 수사 권한</li> <li>· 단독 활동은 상표나 지리적 표시 관련으로 한정</li> </ul>
<b>과학기술조사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산업재산권의 침해문제를 담당하고 전문성을 갖춘</li> <li>· 인력이 부족</li> </ul>
<b>세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IP에 관한 침해 문제를 단속</li> <li>· 수출입 화물만 관여</li> </ul>

[ 행정구제 관련 기관 ]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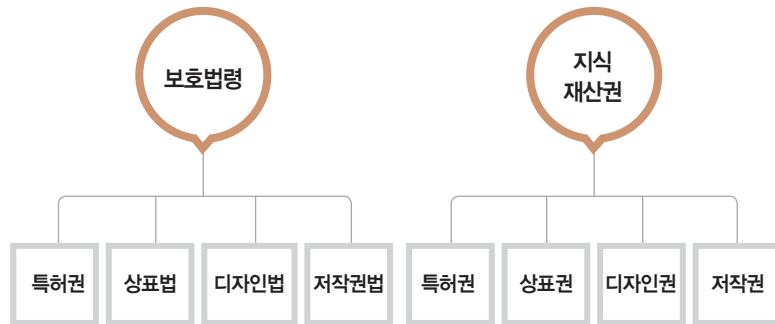
# 06

## 싱가포르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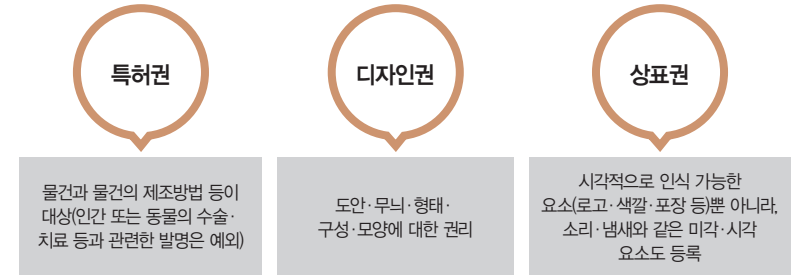
### 01. 싱가포르 지식재산권의 체계

#### 보호법령

#### 보호체계



#### 주요 지식재산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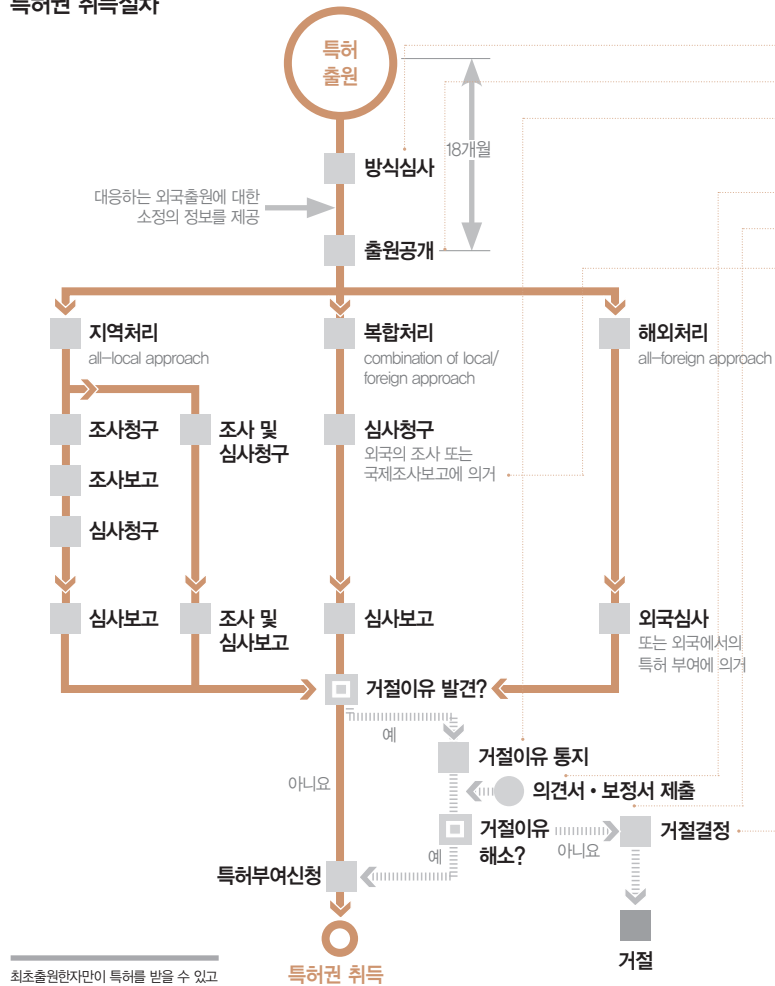


#### 특허상표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 02. 싱가포르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절차

### 특허권 취득절차



최초출원지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선출원주의) 제출된 서류(명세서·도면 및 청구항·서면주의)를 가지고 심사에 의하여(심사주의) 권리가 정해짐

[ 싱가포르특허 출원절차 ]

### 취득절차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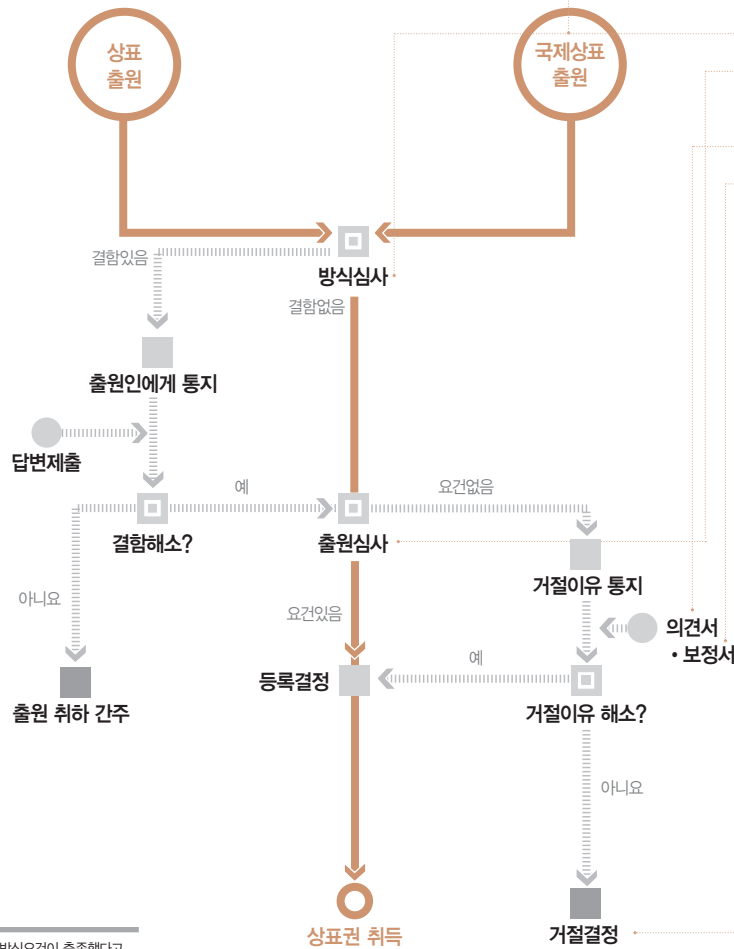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출원공개** 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출원발명을 일정기간 후에 공보로 공중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 **거절이유통지** 해당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하는 통지입니다.
- **거절결정** 법령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발명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 **국제조사보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서 출원할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작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와의 절차상의 차이점

제도	대한민국	싱가포르
전자출원	· 전자출원 가능	· 전자출원 가능
조사제도	· 없음, 다만 우선심사의 경우 조사 협조를 받음	· 조사 및 심사를 별개로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 가능함
심사제도	·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모두 수행	· 우선심사제도 없음
우선심사제도	· 제한적으로 인정	· 우선심사제도 없음
재외자의 출원	· 재외자가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갖지 않으면 특허 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	· 서류를 받을 주소만 있으면 출원 가능
변경출원	· 특허와 실용신안 간 인정	· 없음
이의신청제도	· 무효심판으로 변경	· 없음, 다만 특허 후 조정, 특허 포기·침해 또는 취소 절차에서 보정에 대한 이의 가능
존속기간	· 특허출원일 후 20년	· 동일



### 상표권 취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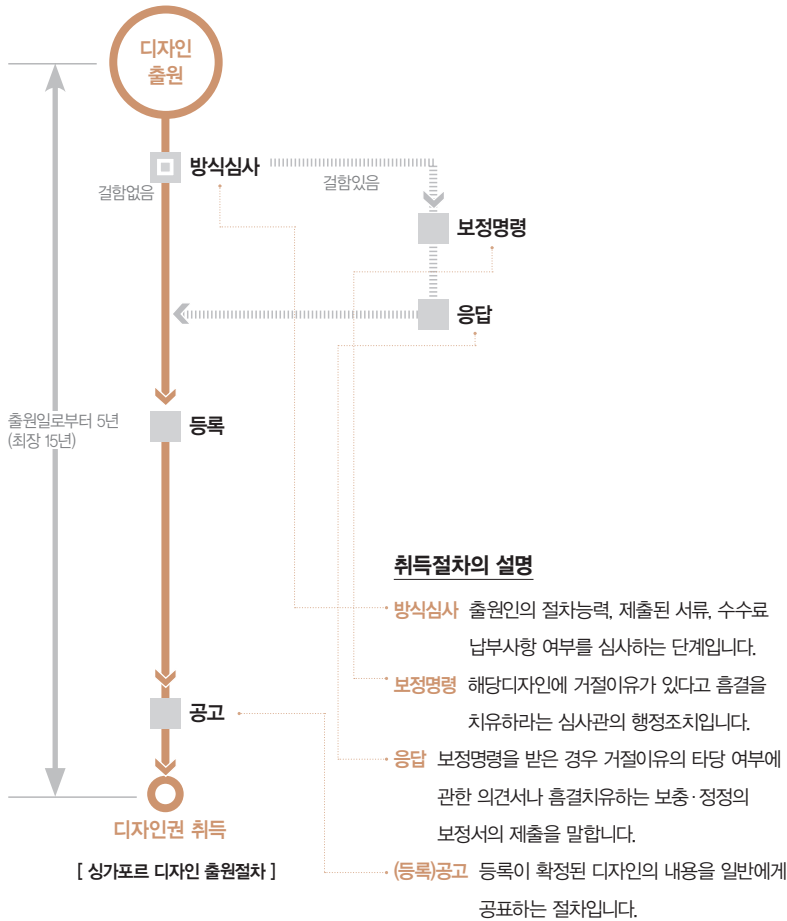
상표출원의 방식요건이 충족했다고 인정되면,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심사함

[ 싱가포르상표 출원절차 ]

### 취득절차의 설명

- 국제상표등록출원 마드리드협정에 따라서 타국에서 싱가포르로 하는 출원입니다.
- 방식심사 출원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출원심사 출원상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거절결정 법령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있어 등록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 의견서 출원에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타당 여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보정서 출원에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보충·정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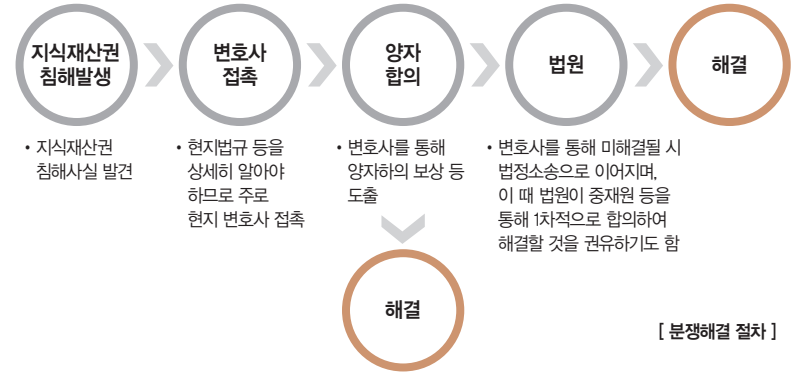
### 디자인권 취득절차



방식심사만 행해지며, 신규성 등의 실체적 등록 요건의 심사는 행해지지 않음

### 03. 싱가포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방안

#### 분쟁해결의 큰 흐름



#### 민사적 보호

- 침해자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주요한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 상표권·저작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통관조치 등이 주요한 행정수단입니다.
-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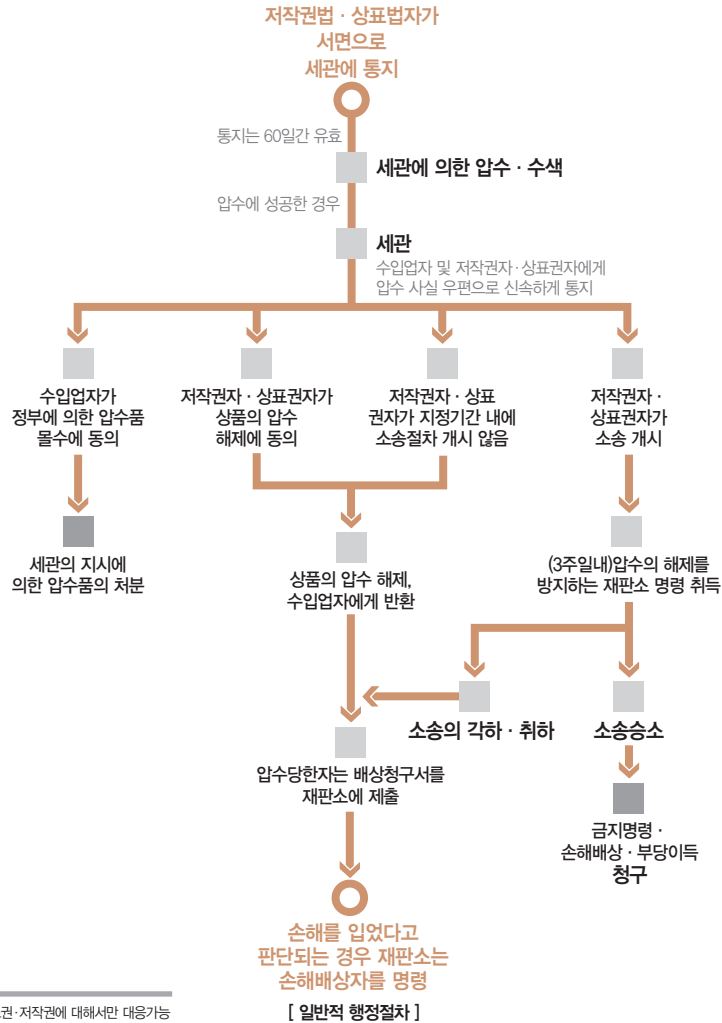
#### 형사적 보호

- 상표권·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표의 위조	· \$10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형
등록상표의 허위사용	· \$10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형
형법위반을 범하기 위한 물품의 제조 혹은 소지	· \$10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형
허위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거래	· 각 위반 물품에 대해서 \$10,000의 벌금 (총액은 최고\$100,000까지) 또는 5년이하의 형
금지된 문장 또는 국장 등의 상표상의 표시	· \$5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형

[ 형사상 처벌대상 및 구제방법 ]

### 행정적 보호



상표권 · 저작권에 대해서만 대응가능

## 04. 싱가포르 진출 시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싱가포르 사람들은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한류문화와 한국상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 때문에 한국산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싱가포르 내 지식재산권 비용은 한국에 비해 다소 소모적이며 지식재산권 확보는 한국에서의 PCT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업대상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원 기반의 국가로서 지식재산권을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엄격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그리하여 싱가포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안전한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으로 이 정도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행해지는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싱가포르 진출 기업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IP-CEP (Intellectual Property-Creation, Exploitation and Protection)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의 인지도 강화 및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기구 · 기업 · 산업단체 · 기술네트워크 등이 합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SurfIP (www.surfi.gov.sg)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을 위한 종합 포털사이트
IP Parade	지식재산권 소유자 · 지식재산권 서비스제공자 · 지식재산권 투자자 간의 정보, 아이디어 및 상품 교환을 위한 플랫폼
SCOPE IP	회사들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best practice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IP Starter (ipstarter.surfi.gov.sg)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의사결정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슈교육

[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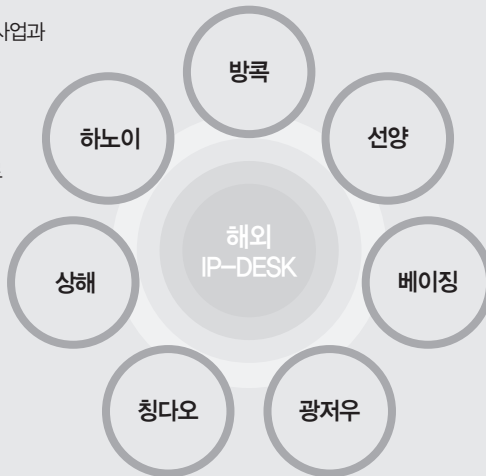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록

### 해외 지식재산권 센터 (IP-DESK)

#### IP-DESK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안정적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의 주관하에 지식재산권의 인식제고,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식재산센터입니다.



#### IP-DESK의 역할



-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상담
- 상표출원절차·권리확보·분쟁대응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적인 상담
- 전화·이메일·IP-DESK 내방 및 출장상담 가능
- 지식재산권침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제공
- 기업실정에 맞는 단계별 침해·피침해 대응 전략 수립
-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 및 정보를 제공
- 지식재산권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이슈 제공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출원등록 비용을 지원
- 상표출원등록 비용의 70% 지원, 1회사당 4건
-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제공
- 침해조사비용의 70% 지원, 1회사당 1건

#### 해외 IP-DESK 전담요원(www.kipra.or.kr/business/weak4.php)

국가	지역	담당자	이메일	전화(T)·휴대폰(M)	
중국	베이징	한준화	bleu1002@kotra.or.kr	T. 86-10-6410-6162(62) M. 86-10-6419-6162	
		성주화	710074@kotra.or.kr	T. 86-10-6410-6162 M. 86-150-1002-4749	
		황영봉	hyt1123@kotra.or.kr	T. 86-10-6410-6163 M. 86-1381-123-8001	
	상하이	현진연	shanhaaip@kotra.or.kr	T. 86-21-5108-8771(148)	
	칭다오	윤대현	ydh1028@kotra.or.kr	T. 86-532-8388-7931~4 M. 86-187-5424-4915	
	광저우	강유군	yoogun@kotra.or.kr	T. 86-20-2208-1600(1401) M. 86-131-2826-8731	
		김춘연	chunyan021@kotra.or.kr	T. 86-20-2208-1600(1405) M. 86-139-2954-8086	
	선양	이지은	jelee@kotra.or.kr	T. 86-157-1231-5266 M. 86-138-0404-5060	
	태국	방콕	이부영	pylee@kotra.or.kr	T. 66-2-204-2511 M. 66-87-040-0700
	베트남	하노이	신지돈	jdshin@kotra.or.kr	T. 84-4-3724-5203 M. 84-90-980-2307

## 외식산업 등 중소기업 해외투자 지원제도

지식경제부, KOTRA 등에서 중소기업 해외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	지원유형	내용 및 지원기관	지원대상
투자 검토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정보시스템(www.ois.go.kr) 지식경제부·KOTRA</li> <li>세계법제정보(world.moleg.go.kr)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li> <li>해외정보(www.nis.go.kr) 국가정보원</li> <li>해외경제투자정보(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li> </ul>	전 기업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 유망국의 투자환경 및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li> <li>KOTRA·중소기업진흥공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li> </ul>	해외진출 희망기업
	상담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 종합상담 및 컨설팅지원 해외진출기업지원단</li> <li>해외투자 콜센터운영, 해외진출 맞춤형컨설팅 KOTRA</li> <li>해외진출 금융 상담 한국수출입은행</li> <li>국제조세상담 국세청</li> <li>온라인 관세상담 관세청</li> <li>경영(해외진출) 자문지원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li> <li>IT서비스 해외진출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li> </ul>	해외진출 희망기업
	금융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투자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li> <li>해외투자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li> </ul>	해외진출 희망기업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 조사대행, 해외투자환경 조사출장 지원, 투자조사단</li> <li>파견지원 KOTRA</li> <li>선진기업연구소 벤치마킹 기술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li> </ul>	해외진출 희망기업
	신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한국수출보험공사</li> <li>중국기업 신용조사 한국무역협회</li> </ul>	해외진출 희망기업
	해외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li> </ul>	해외진출 희망기업

단계	지원유형	내용 및 지원기관	지원대상
투자 실행	입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인큐베이터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li> </ul>	중소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법인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 프리미엄서비스 KOTRA</li> </ul>	희망기업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드잡(www.worldjob.or.kr) 한국산업인력공단</li> </ul>	희망기업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Korea Desk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진흥공단</li> <li>* 설치 베트남(하노이)·필리핀(마닐라)·인도네시아(자카르타)</li> <li>중소기업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li> </ul>	희망기업
현지 경영	애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 외교통상부(각 재외공관)</li> </ul>	해외진출 기업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지식경제부/KOTRA</li> <li>* 설치 중국(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다롄)·베트남(호치민·하노이)·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러시아(모스크바)·인도(뉴델리), 캄보디아(프놈펜)</li> </ul>	해외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지식재산권보호 데스크(IP Desk) 특허청/KOTRA</li> <li>* 설치 중국(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li> </ul>	지식재산권 등록 중소기업

## 각 국가별 지식재산권의 법령 및 집행관청

### 각 국가별 제도 및 가입조약

법령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국내법	특허법		○	○			○
	실용신안법	○ (특허법)	○	○	○ (전리법)	○ (특허법)	×
	의장법		○	○			○
	상표법	○	○	○	○	○	○
	부정경쟁방지법	○	○	△(각국법에서 보호)	○	○	△
	저작권법	○	○	△(각국법에서 보호)	○	○	○
조약	WIPO설립조약	○	○	○	○	○	○
	TRIPS	○	○	○	○	○	○
	파리조약	○	○	○	○	○	○
	특허협력조약(PCT)	○	○	○	○	○	○
	마드리드조약	○	○	○	○	○	○

○ 는 국내법 정비원료(지식재산권 포괄법의 경우도 있음) 또는 조약가입 원료를 나타냄  
 △ 는 개별법이 아니라 관습법 및 기타법률에 의해 일부 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냄  
 × 는 국내법의 미정 또는 협약되지 않은 가입을 나타냄

### 각 국가별 지식재산권 집행관청

단계	지식재산권 관할관청	내용 및 지원기관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http://www.uspto.gov
일본	일본 특허청	http://www.jpo.go.jp
유럽	유럽 특허청	http://www.epo.org
	유럽 공동체 상표청	http://oami.europa.eu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국	http://www.sipo.gov.cn
베트남	베트남 특허청	http://www.noip.gov.vn(NOIP)
싱가포르	싱가포르 특허청	http://www.ipos.gov.sg(IPOS)

## 해외 지식재산권의 취득 비용

납부 내역		납부액(원)	비고
대리인 선임 비용, 부가세 별도			
PCT	국제출원료	30매까지	1,716,000
		30매 초과 시	1매당 19,000
	조사료	한국어로 출원 시	450,000
		영어로 출원 시	1,300,000
	송달료		45,000
	국제예비심사	심사료	450,000
		취급료	258,000
	국내단계 진입비용 (나라마다 다름)	기본출원료	430,000
		번역료	2,500,000
		특허검색료	700,000
심사청구료		(미국은 해당 없음)	
지정료		(유럽의 경우 해당)	
특허심사료		280,000	
등록료		2,300,000	
유지료 (나라마다 다름)		1,280,000 (3년차 납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으로 등록 시 금액임</li> <li>등록 후 3년, 7년, 11년차 세 차례 납부하며 각각 금액이 다름</li> </ul>
마드리드	한국특허청 납부 금액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1건당 5,000
		국제등록존속 기간갱신신청	1건당 3,000
	국제사무국 납부 금액	기본수수료	흑백상표 783,600 색채상표 1,083,600
		추가수수료	3개류 초과 시 각 1류당 120,000
보충수수료		1 지정국당 120,000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선연한 수수료	

• 환율은 1,100원/USD, 1,200원/CHF (2012.3.22 기준)

##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시 기타 유의사항

###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유의사항

#### 핵심 지식재산의 보유여부 검토

- 핵심 지식재산을 보유하면 기업이 산업 주도권 확보에 유리함

#### 지식재산 인식의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

- 지식재산의 수익자산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술거래·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요구됨

#### 지식재산 체제로의 전환

- 지식재산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므로 지식재산과 R&D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진출국 내 경쟁업체 지식재산권 파악

- 진출국 내에서 경쟁업체 지식재산권 파악이 관련 분쟁을 예방함

### 실시(사용)계약 시 허락자측(권리자, Licensor)이 주의할 점

#### 허락자측 (권리자, Licensor)이 주의할 점

- 실시(사용)권의 종류(전용실시(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독점적통상실시(사용)권)를 명확히 함
- 부쟁의무를 부과함
- 실시(사용)권의 양도 등의 금지조항을 정함
- 발명·고안·디자인 또는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 보증 의무를 부과함
- 계약해제조항·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정함
- 계약 종료 후의 조치를 명확히 함
- 실시(사용)권자에 의한 실시(사용)에 따라 제3자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실시(사용)권자측에 있음을 명기함
- 제3자에 의한 침해 사실을 실시(사용)권자가 권리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

### 실시(사용)계약 시 실시(사용)권자측(Licensee)이 유의할 점

#### 실시(사용) 권자측(Licensee)이 유의할 점

- 허락대상인 권리의 유효성의 보증을 받음
- 출원 중인 권리의 경우는 먼저 등록될 것인지에 대하여 선행기술·디자인 또는 상표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해 둠
- 출원이 등록될 때까지 발명의 고안·디자인 또는 상표의 실시(사용)의 보증을 얻음
- 출원을 조기에 등록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의무를 부과함
- 허락 대상의 권리에 있어 권리자에 그 권리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
- 실시(사용)권의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 신청 수속예의 협력의무를 권리자에게 부과함
- 실시(사용)권자 이외의 제3자에의 허락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해둠
- 선실시(사용)권자의 존부·선실시(사용)권자 출현의 가능성·선실시(사용)권자가 출현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해둠

### 해외에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원칙에 준한 협상

- 이해관계에 집중
-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여러 가지의 대안 마련
-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을 둔 결론 도출

#### WIN-WIN 협상

-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쌍방이 만족하는 협상을 이루어 장기적인 해결책 도출

#### 최대한 많은 정보 보유

- 시장동향·가격정보·수요 및 공급 현황·경쟁사정보 등을 미리 수집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외식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

---

**발행처** 농림수산식품부 ·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화** 02-2110-4000 **팩스** 02-503-7249

**홈페이지** [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한식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306호

**전화** 02-6300-2050 **팩스** 02-6300-2055

**홈페이지** [www.hansik.org](http://www.hansik.org)

**기획 및 진행** 특허법인 이지

**디자인** Sang Company

**인쇄** 글로벌 프린팅

\*본 가이드 북의 상세 내용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http://www.hansik.org)) 및 C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